

# INVENTION & PATENT

2011 March

# 03

Special Issue

[포커스]

주요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Zoom in]

카라 사태로 살펴본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문제

[IP-Trend]

특허청 스마트폰 앱 리뷰

# 2011 CAMPUS PATENT STRATEGY UNIVERSIADE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 ○ 목적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 ○ 경진부문

### • 특허전략수립 부문 (28문제)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

### • 선행기술조사 부문 (29문제)

산업별 가상의 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 판단 및 출원서 보정

## ○ 참가자격

- 국내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 \* 단, 금융관련 문제는 비이공계 대학(원)생 참가 가능
- 특허전략수립 부문 : 팀(3명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가, 지도교수 1인(복수 지도 가능) 필요
- 선행기술조사 부문 : 개인자격으로 참가

## ○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한 : 2011. 2. 25(금) ~ 3. 31(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patent-universiade.or.kr](http://www.patent-universiade.or.kr))에서 신청서 작성  
- 특허전략 수립부문 제출서류 : 재학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 선행기술 조사부문 제출서류 : 재학생명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33, 2835)

## ○ 시상내역

구분	특허전략 수립부문		선행기술 조사부문
	학생	지도교수	
지식경제부장관상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1명(3백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1천만원)	1명(5백만원)	-
특허청장상	4팀(문제당 8백만원)	4명(문제당 5백만원)	3명(문제당 2백만원)
기업	우수상 (문제당 6백만원)	-	(문제당 1백만원)
CEO상	장려상 (문제당 2백만원)	-	(문제당 5십만원)
출연연	우수상 (문제당 6백만원)	-	(문제당 1백만원)
원장상	장려상 (문제당 2백만원)	-	(문제당 5십만원)
은행장상	우수상 (문제당 6백만원)	-	-
	장려상 (문제당 2백만원)	-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최다수상대학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 특허전략수립부문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수상자 중 각각 2명을 선발하여 '12년에 지식재산 해외연수 혜택 부여

## ○ 수상자 취업 우대 기업(19개 기업)

주성엔지니어링, 한화케미칼, 호남석유화학,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주식회사, LG실트론, LG에이디피(주), (주)인트로메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SLS조선, (주)탑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주식회사, 대림산업(주)



주최 특허청 NAEK 한국공학한림원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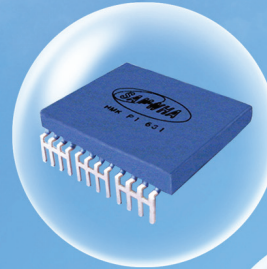




SAMWHA CAPACITOR Co., Ltd.

# Green Technology with SAMWHA

PEA (MLCC for High Power  
Electronic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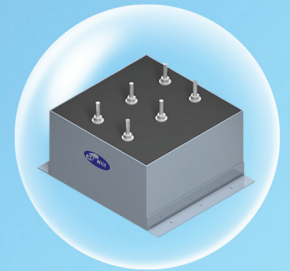
HEV (Hybrid & Electric Vehicle)  
DC link Capac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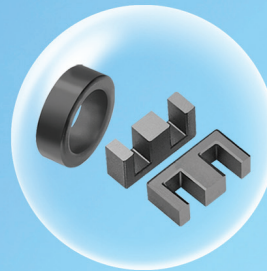
Green Cap (ED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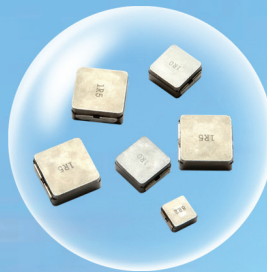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Capacitors



Ferrite and  
Magnetic Powder Cores



MPC Inductors



High Voltage MLCCs



[www.samwha.com](http://www.samwha.com)

124 buk-ri, Namsa-myeon, Che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82-31-332-5441, Fax. 82-31-332-7661

## PRODUCT SELECTION

### DB Cr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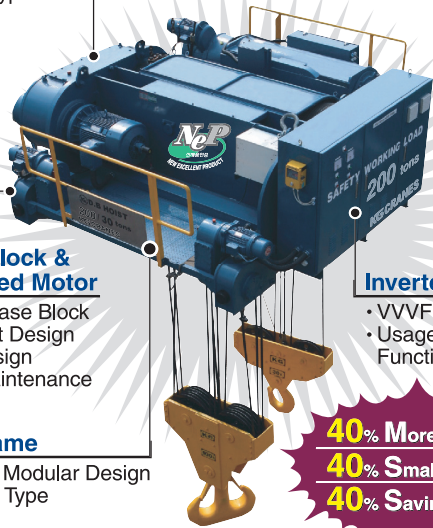
(대통령 표창, NEP 인증 제품)

#### Gear Box & DC MG Brake

- Modular Design
- Variable Speed
- Variety Type of Brakes

#### Reference

- 현대중공업 : 20,000 ton/year
- POSCO : 30,000 ton/year
- 삼성조선 : 50,000 ton/year
- American Shipyard : 5,000 ton/year
- Middle East Steel Mill : 10,000 ton/year



#### Wheel Block & TS Geared Motor

- Single Case Block
- Compact Design
- BBS Design
- Easy Maintenance

#### Inverter Panel

- VVVF Control
- Usage Memory Function

#### Main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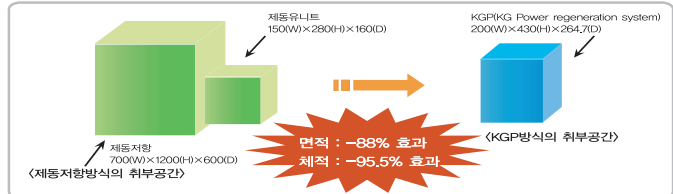
- 10Kinds Modular Design
- Package Type

**40% More Light**  
**40% Smaller**  
**40% Saving Cost**

### KGP (KG Power regeneration system)



#### KGP 도입에 의한 공간 절약



#### KGP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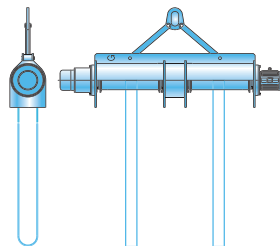
모터 용량 (KW)	고효율 호이스트 KGP적용 후 절감율(%)	절전 용량 (KW)	산업체 적용 전기요금 절감액(원)		
			3,600시간	4,800시간	5,400시간
11	11	1,21	233,917	311,890	350,876
15	11	1,65	318,978	425,304	478,467
22	17	3,74	723,017	964,022	1,084,525
37	22	8,14	1,573,625	2,098,166	2,360,437
55	21	11,55	2,232,846	2,977,128	3,349,269
90	22	19,8	3,827,736	5,103,648	5,741,604
132	22	29,04	5,614,013	7,485,350	8,421,019

• 한국고벨(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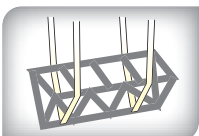
### Turning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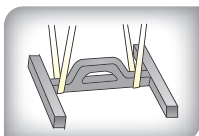
**Turn it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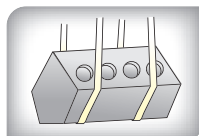
#### Application



Truss



Steel Structure



Engin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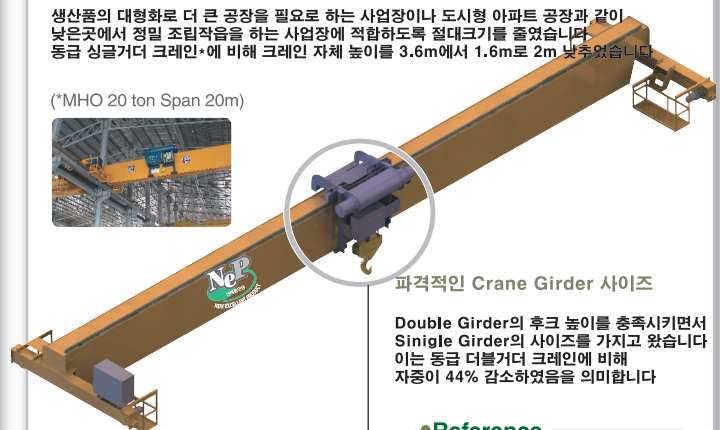
### Low Space Crane

(NEP 인증제품)

#### 건축비를 낮추는 크레인

생산품의 대형화로 더 큰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도시형 아파트 공장과 같이 낮은곳에서 정밀 조립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절대크기를 줄였습니다. 등급 상급거더 크레인·에 비해 크레인 자체 높이를 3.6m에서 1.6m로 2m 낮추었습니다.

(\*MHO 20 ton Span 20m)



파격적인 Crane Girder 사이즈

Double Girder의 후크 높이를 충족시키면서 Single Girder의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등급 더불거더 크레인에 비해 자중이 44%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Reference

- 두산중공업 : 8,000 ton/year
- POSCO : 6,000 ton/year

VVVF Control (인버터 컨트롤) 진동, 소음, 슬립이 없어 미숙련공도 쉽게 사용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hand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Hook 높이  
Mono Girder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높이를 만족시키며, Double Girder Crane의 높이 혹은 그 이상을 만족시킵니다.

# 2011년 주요

## 국제발명품전시회 일정

### 참가전시회

전시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태국 발명가의 날 행사	2.2 ~ 2.5	1월 초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4.6 ~ 4.10	2월 말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20 ~ 5.22	3월 말
피츠버그 국제발명투자전시회	6.14 ~ 17	4월 말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미정	5월 말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29 ~ 10.2	7월 말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	10.27 ~ 10.30	8월 말



#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신청 안내

## 신청안내

### ■ 출품분야

- 자유발명 분야
- 주제발명 분야
- 주제 1) 생활속에서 위험한 문제를 해결한 안전한 시스템이나 안전장치, 안전용품
- 주제 2) 재활용품을 이용한 GREEN ENERGY 발명

### ■ 출품자격

-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 ※ 청소년은 만13세~만18세 (2011년 3월 2일 현재)
- ※ 지도교사 자격 : 학생의 시·군 관할 현직 교원만 가능함.

### ■ 출품형태

- 1인당 3건 이내 출품(공동발명 불가)
- 물품에 관한 개량발명뿐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발명도 출품 가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본인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작품도 출품 가능
- ※ 학교당 작품건수 제한 없음

### ■ 출품규격

- 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100cm, 무게 30kg 이내
-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크기가 아닌 모형 제작도 가능함.
- ※ 제작금액이 일정금액(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함

### ■ 출품신청

- 접수기간 : 2011. 3. 2(수) ~ 4. 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접수 불가)
- ※ 온라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페이지 3월 2일 오픈 예정)

### ■ 신청처 : [www.kipa.org](http://www.kipa.org) / [www.kosie.net](http://www.kosie.net)

### ■ 출품할 수 없는 작품

- 과거 본 대회 및 타 기관주최 대회 출품작, 과학실험실습, 기자재, 금년도에 개최된 타 기관 대회 출품작
- 출품자가 직접 발명·제작한 것이 아닌 작품
- ※ 표절작, 대리작, 타 대회 중복 응모, 기 입상 등 기타 정당하지 못한 작품을 출품한 자 및 지도교사는 5년간 출품 제한 및 입상 취소

### ■ 출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자는 접수시점에서 관련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함(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차상위 확인서)
- 1차 서류심사 및 선행기술심사 후 2차 작품(현물) 심사 대상자를 통지하며, 작품(현물)심사대상자는 해당 심사 일에 맞추어 작품과 가점대상 자료를 지참한 후 꼭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발명품을 소개하는 설명서(전시목적의 판넬)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료는 2차 작품(현물)심사 안내에서 공지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http://www.kipa.org)를 참고하세요.

### ■ 문의처 : [sol4711@kipa.org](mailto:sol4711@kipa.org)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목적

- 과학관을 활용한 발명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융합형 발명교육 추진

## ■ 근거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 발명진흥법 제7조(학생발명 활동의 촉진)

## ■ 사업개요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11년부터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시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창의력 기반의 발명-과학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의 다양한 과학체험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명교육컨텐츠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은 체험형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	심화	캠프
교육대상	초등 3~6학년	초등 4~6학년	초등 3~6학년
교육기간	매월 2, 4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매월 2주 토~일요일
교육시간	09:00 ~ 12:00 13:00 ~ 16:00	09:00 ~ 12:00 13:00 ~ 16:00	토요일 15:00 ~ 익일 12:40
교육정원	1회 20명	1회 20명	50명
교육장소	국립과천과학관 교육동 8실험실		국립과천과학관 엔씨홀, 캠프장

※ 각 과정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에서 신청받고 있음.

☎ 문의전화: 02-3459-2757



# 2011년 신규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당신을 지식재산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분량	1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최근 기업 내 문제해결방안 도출용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이디어 발상기법 TRIZ의 기초적인 개념 및 이론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표준특허 이론과 사례

분량	7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표준특허에 관한 이론 및 사례, 국내외 현황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표준특허의 의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표준특허의 획득절차 및 창출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MICE산업과 지식재산

분량	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s)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에 있어 MICE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

분량	5차시
학습방법	플래시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특징

본 과정을 통해, 국내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특허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내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함과 더불어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과정 이외에 2011년 현장 동영상 신규과정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인터넷과 지식재산권/국제특허분쟁에서의 비침해분석 및 무효주장/중소기업의 라이선스 협상전략/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기후변화, 기술이전 그리고 IP/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본 과정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www.ipacademy.net)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체(연구소) 등의 지식재산 이러닝 지원 안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받고자하는 기업체(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지식재산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편의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대상

온라인 단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중소·대), 연구기관, 공공기관

## 교육비

전액무료

##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 지원내용

### 전용사이트 제공

- 기업(관)명.ipacademy.net ex)hyundai.ipacademy.net
- 해당 기업체 전용 사이트 개설

###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

- 전체 61개 과정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등
- 교육상담을 통하여 전체 과정 중 귀 기업(관)에 필요한 과정만을 재구성하여 맞춤 과정 제공

### 체계적인 학습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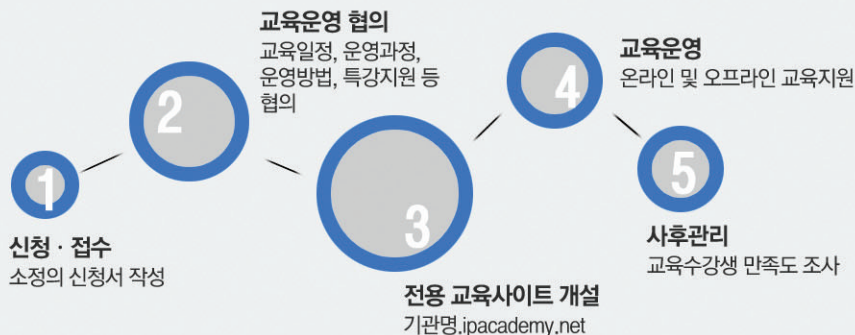
-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하여 질의응답 제공
- 직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관리

### 오프라인 방문 특강 제공

- 온라인 교육상에 부족한 부분을 오프라인 방문 특강을 통하여 보충교육 실시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위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 교육신청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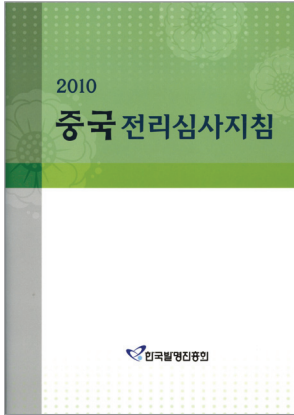
##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 접수처 : E-mail [elnino82@kipa.org](mailto:elnino82@kipa.org), Tel 02-3459-2776, Fax 02-3459-2789

#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 출간안내



## 책소개

우 리회는 특허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중국전리심사제도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최초 출판된 「중국전리심사지침서」의 중국전리심사지침 및 중국전리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른 중국 특허심사에 대한 지침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대중국 특허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허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 중국전리심사지침 개정판」은 제1부(초보심사), 제2부(실질심사), 제3부(국내단계진입 국제출원의 심사), 제4부(복심 및 무효심판청구의 심사), 제5부(전리출원 및 사무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당 판매가격은 50,000원이다.

## 구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김민국 주임 (02-3459-2797)  
eldaah7@kipa.org

# 글쓰기 훈련소

- 간단하고 쉽게 글 잘 쓰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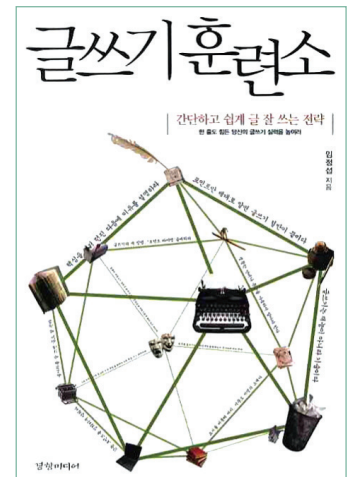
## 책소개

한 줄도 힘든 당신의 글쓰기 실력을 높여라!  
간단하고 쉽게 글 잘 쓰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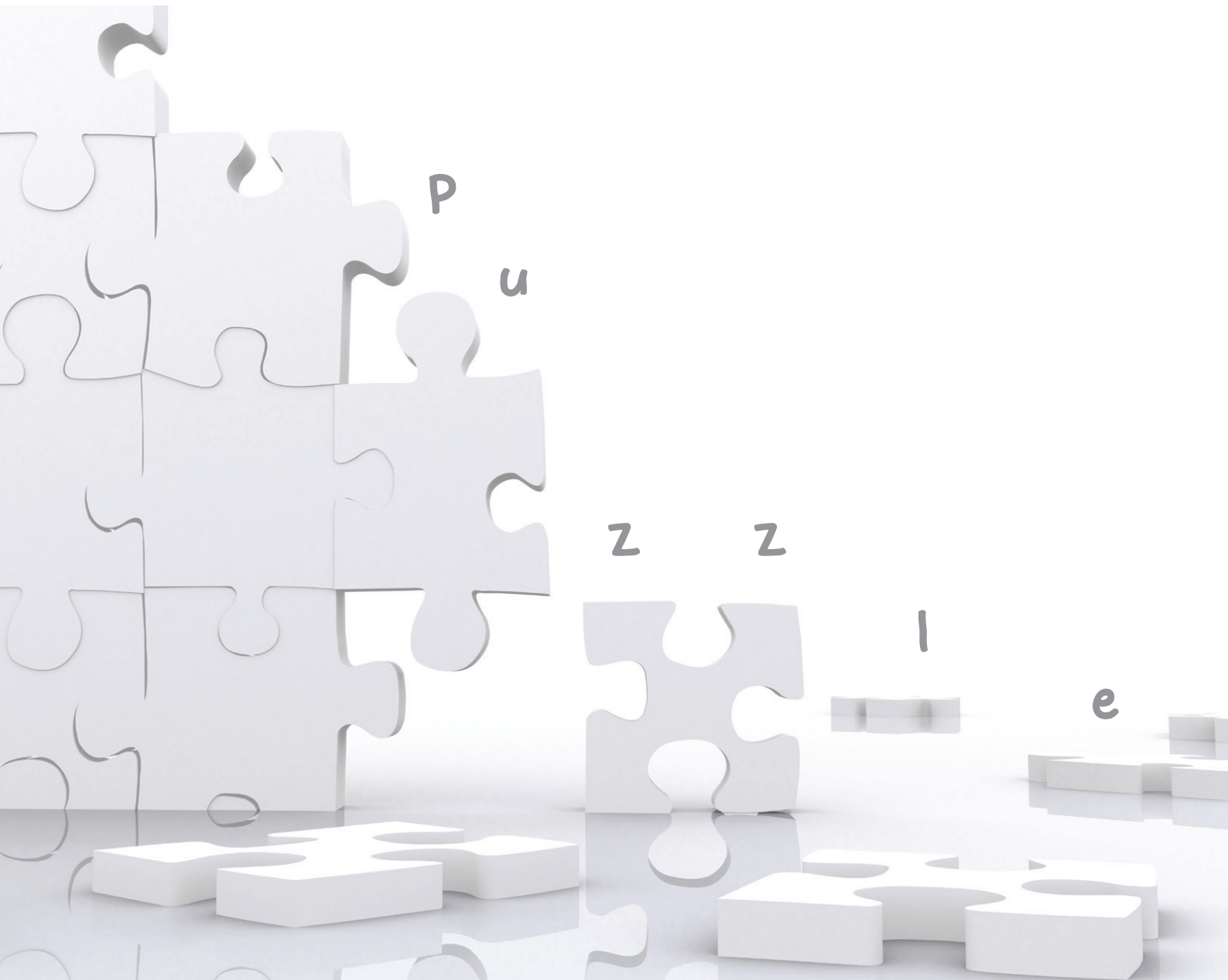
BS라디오 <직장인 성공시대> 글쓰기 코치에게 배우는 글쓰기 입문서 「글쓰기 훈련소」, 이 책은 저자가 십여 년의 언론사 경력과 기자 양성,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한 '포인트 라이팅'이란 글쓰기 기법을 소개한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글을 못 쓰는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나보자.

최근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7.4%가 자신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길 바라고 있으며, 직장생활에 있어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한다. 더욱이 개개인의 목소리가 여론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꾸준히 연습하면 바이엘에서 체르니 단계로 피아노 실력이 향상되듯이 글쓰기 역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달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글쓰기 법으로 '포인트(P-O-I-N-T)글쓰기'라는 틀을 제시한다. 모든 글의 기본 구조가 되는 '배경-내용-의견'을 확장시켜 'P(포인트 파악하기)-O(아웃라인 짜기)-I(배경 정보 넣기)-N(뉴스 넣기)-T(생각, 느낌, 의견 넣기)'라는 글쓰기 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대표적인 실용 글쓰기인 서평, TV리뷰, 보고서, 기획서 등의 비즈니스 라이팅까지 알려준다. 다년간 시민기자 양성에 힘쓴 저자만의 노하우가 밴 이 책은 다양한 글쓰기의 지침이 된다.



저 자 \_ 임정섭  
출판사 \_ 경향미디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여)  
주소: .....  
전화: .....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아이디어를 글로 옮기면 글이 살아 움직인다. 글이 살아 움직이면 글이 살아 움직인다.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3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 발명특허 기네스 모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새로운 연속기획특집으로 '발명특허 기네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 뒷장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어가는 발명특허 관련 자료 제1호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명특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이 연속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제1호 또는 최대 등 '기네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된 자료보다 앞선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 소개하겠습니다. 기네스로 소개되는 순간 소장하신 자료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기록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소개 대상은 편의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 시행 이후 자료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처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  
02)3459-2797

# Contents

## IP Report

14	특허확대경	사례를 통해 본 정정요건
26	포커스	주요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31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재권일반, 특허, 상표, 법일반
32	시선집중I	사례를 통해 본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37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8	시선집중II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

## IP Column

44	Zoom in	카라 사태로 살펴본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문제
48	IP-Trend	특허청 스마트폰 앱 리뷰
56	지식재산 경영전략	위기경제 시대의 미래경영 (위기 경제 시대에 미래를 생각한다)
63	발명 365	지렛대
64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주)아진게네시스

## IP Information



70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경상북도 (안동산약), 전라남도 (영암무화과)
72	건강하게 살시다	건강퀴즈 (재미있는 건강상식 퀴즈)
74	KIPO NEWS	특허청 소식
76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77	회원이입을 축하합니다	2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78	문화산책	공연안내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79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Invention & Patent March 2011 Vol. 416

# Report

- 특허확대경
- 포커스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시선집중 I
  - 특허 Q&A
  - 시선집중 II



# 사례를 통해 본 정정요건



정재훈

특허심판원 심판8부 심판관  
전 특허청 소송수행관, 심판정책과 서기관

## 〈 목 차 〉

### I. 서론

### II. 정정심판 제도

1. 효력
2. 요건
  - (1) 우선요건
  - (2) 병렬요건

### III. 감축과 관련된 사례 및 주요 논의점

1. 이음쇠 사건
2. 모발촉진기 사건
3. 중합체 사건
4. 올리고머 사건
5. 접착제 사건(日)

### IV. 오기정정과 관련된 사례 및 주요 논의점

1. 파일직물 사건
2. 알킬렌기 사건(日)
3. 히터코일 사건
4. 과자병생지 사건(日)
5. 리모컨 사건

### V. 석명과 관련된 사례 및 주요 논의점

1. 가스버너 사건
2. 시멘트 사건
3. 수지조성물 사건
4. 양도 사건
5. 권취기 사건

## I. 서론

특허·실용신안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명세서 특허, 청구범위에 글로써 표현된 것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복잡한 기술적 사상을 표현하는데 완벽하지 못하고 명세서를 기술하는 자가 사람이므로 실수가 발생하는 등 발명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권리가 그대로 인식되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크게 다른 모습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법에서는 정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어 위와 같은 면을 보완해주고 있다. 실무적으로 정정은 크게 무효신청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경우와 미흡하게 발생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라이선스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된다. 무효신청이유가 선행기술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감축이 필요하고, 기재불비나 라이선스시 권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명확이 필요하다.

## II. 정정심판 제도

### 1. 효력

우선 정정이 허가되면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출원·출원공개·등록결정 또는 심결 및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를 부

여한다. 정정허가된 시점부터 등록 명세서 및 도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2. 요건

정정은 명세서 및 도면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범위도 명세서의 일부이므로 정정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정정은 등록된 이후에 권리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므로 등록전 권리에 수정을 가하는 보정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등록되어 공시된 권리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1) 우선요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1호), 잘못된 기재의 정정<sup>1)</sup>(2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sup>2)</sup> 경우(3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정된 사항이 위 3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그 정정은 이후의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중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은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오기정정 및 석명은 권리명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2) 병렬요건

정정사항이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후 요건들을 살피는데 이후 요건은 판단시 우선순서가 없고 정정이 적법하려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이후 요건은 신규사항 추가 금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금지<sup>3)</sup>,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sup>4)</sup>의 3가지 추가 요건이다.

첫째, 신규사항 추가 금지 요건은 우선요건의 각호에 따라 적용되는 양태가 다르다.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석명인 정정에 대해서는 등록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정되어야 하고, 오기정정에 대해서는 최초출원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정되어야 한다. 오기정정시 최초출원 명세서 및 도면을 기초로 하는 이유는 정정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출원경과를 통

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전혀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 잘못된 기재가 실수로 들어가 버린 보정서가 제출되어 등록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출원명세서에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기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된다.<sup>5)</sup>

두 번째, 변경금지 요건은 등록된 권리가 제3자에 공시되었으므로 제3자의 신뢰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취지로서 각호에 규정된 모든 정정요건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정정전에는 침해가 아닌데, 정정으로 인해 갑자기 침해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권리범위 해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본 조항은 우선 정정전 권리범위와 정정후 권리범위를 파악하여 권리범위의 변동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정전 기재가 모호한 경우<sup>6)</sup>에는 정정전 권리범위 파악이 어려워 결국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 번째, 독립특허요건은 정정후 발명이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정인정시 하자 없는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 정정인정시 소급효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로서 특허요건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독립특허요건은 우선요건의 각호중 석명인 정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sup>7)</sup>

- 1) 실무상 오기정정이라 한다.
- 2) 실무상 석명이라 한다.
- 3) 실무상 변경금지라 한다.
- 4) 실무상 독립특허요건이라고 한다.
- 5) 물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고 독립특허요건도 만족해야 비로써 정정이 인정된다.
- 6) 실무상 정정전 기재가 모호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7) 석명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전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만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석명의 경우 정정전은 불명료하고 정정후는 명확하므로 불명료한 정정전 권리 파악이 문제시되는데, 청구범위 기재가 모호하면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므로 정정전 발명은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파악된 정정전 발명과 명확하게 된 정정후 발명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 III. 감축과 관련된 사례 및 평가

#### 1. 이음쇠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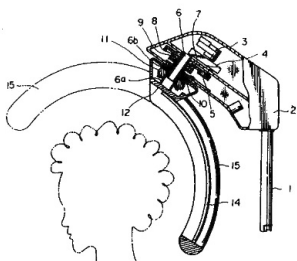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정정)
금속재로 된 이음쇠 몸체(1)의 일측에 형성된 끼움홈(3)에 합성파이프(8)가 끼움 걸림되는 걸림부(4)의 주변에 있어서, 걸림부(4)의 주변에 다수의 링홈(4)을 형성하여 이 링홈(4)에 내열성수지로 된 오링(5)을 끼움함을 특징으로 한 합성파이프의 이음쇠	금속재로 된 이음쇠 몸체(1)의 일측에 형성된 끼움홈(3)내측단에 요홈을 형성하여 이 요홈에 절연링(C)을 먼저 끼움한 다음, 그 끼움홈(3)에 합성파이프(8)가 끼움 걸림되는 걸림부(4)의 주변에 있어서, 걸림부(4)의 주변에 다수의 링홈(4)을 형성하여 이 링홈(4)에 내열성수지로 된 오링(5)을 끼움함을 특징으로 한 합성파이프의 이음쇠	이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명료한 기재 없어 석명이 아니고, 새로운 구성이 추가됨으로써 등록고안이 한정되어 감축임. 정정부분에 대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진출원의 출원에 앞서 출원한 다른 고안에 대한 설명이어서 이진 고안에 대한 것이 아님. 정정후 고안은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를 갖게 되었고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있어 변경임

\* 감축이지만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가 생겼는지 여부로서 변경여부를 판단함.

\* 판결에서는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가 없었으나, 절연링(c)이 정정 후 발명의 전용품이라면 절연링(c) 생산업자는 정정인정에 의해 간접침해자가 될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 2. 모발촉진기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정정무효)
어떤 종류의 적외선을 조사하는 만곡된 조사요소와, 상기 요소를 지지하며 또한 상기 요소로부터 조사되는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반사기와, 상부에 상기 반사기가 배치되어 상기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을 위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를 작동시키는 구동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처리촉진장치	어떤 종류의 적외선을 조사하는 만곡된 조사요소와, 상기 요소를 지지하며 또한 상기 요소로부터 조사되는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반사기와, 상부에 상기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및 상기 회전부재를 작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며, 상기 반사기가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시 피시술자의 머리의 정상부, 양측부 및 후부를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편심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처리촉진장치	정정은 반사기가 지지되는 부위를 한정하고, 반사기의 운동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감축에 해당하고, 피시술자 머리영역을 한정된 부분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반사기의 회전영역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변경이 아니다.



15:반사기/14:조사요소/6a:회전튜브/12:회전브라켓

→ 정정전에는 반사기가 지지되는 부위가 한정되지 않았으며 반사기가 피벗지지 운동을 한다고만 넓게 청구되어 있었는데, 정정하면서 반사기의 지지부위를 한정하고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 범위를 피시술자의 두부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반사기의 운동방식을 구체화한 경우가 감축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V.1. 가스 버너사건 및 2. 고무제품 사건에서 석명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르다.

### 3. 중합체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특허법원 99. 7. 1. 선고 98허9840 판결(정정) /미상고
방염제로서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페이트) 또는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포네이트)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족 폴리카보네이트(A), 스티렌-함유 공중합체 및/또는 스티렌-함유 그래프트 중합체(B) 및 방염제(C)를 함유하는 중합체 혼합물.	방염제로서 하기 일반식의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페이트) 또는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포네이트)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족 폴리카보네이트(A), 스티렌-함유 공중합체 및/또는 스티렌-함유 그래프트 중합체(B) 및 방염제(C)를 함유하는 중합체 혼합물.  $R_1 - \left( O \begin{array}{c} \text{O} \\ \parallel \\ \text{P} \\ \text{O} \end{array} \right)_m - \left[ \begin{array}{c} \text{O} \\ \parallel \\ \text{X} - \text{O} - \text{P} \\ \text{O} \end{array} \right]_n - R_2$	하기 일반식에 의해 표현되는 화합물에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페이트) 및 폴리(아릴-아릴렌 포스포네이트)와는 전혀 상이한 다수의 화합물도 포함되어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임 <sup>8)</sup> 또한, 하기 일반식에 의해 표현되는 화합물이 넓어지게 되어 정정후 기재가 불명료하게 되고 폴리- 포스포네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이 방염제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독립특허요건에 위배됨
	상기 식에서, R1, R2, R3, R4는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된 아릴 그룹이고(단, R1, R2, R3, R4는 할로젠 원자 또는 알킬 그룹으로 치환될 수 있음), X는 아릴렌 그룹이며, m1, m2, m3, m4는 각각 독립적으로 0 또는 1이며, n은 1 내지 3이다.	

\* 상기 판결에서는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정정하되 하위개념의 발명이 선택발명이 되어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의 발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명으로 감축하여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특허법상 정정심판의 제도적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라고 원칙론을 설시하였다.

### 4. 올리고머 사건

정정 전 1항	정정신청 1항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정정무효) * 미상고 확정
(a)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20~90중량%,	(a) 말단에 결합된 알릴기 및 하기 구조식 I 내지 III으로 표시되는 적어도 하	* 감축판단 (a)정정 :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8)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정불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정정 전 1항	정정신청 1항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정정무효) *미상고 확정
(b) 디알릴 프탈레이트, 디알릴 이소프탈레이트, 디알릴 테레프탈레이트, 디알릴 아디프에이트, 트리알릴 (이소)시안우레이트 및 트리알릴 트리멜리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의 다 알릴에스테르모노머 10~80중량%, 및 (c) 비닐 벤조에이트, 알릴벤조에이트, 페닐(메타)아크릴레이트 및 벤질(메타)아크릴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의 일관능 중합성 모노머 40중량% 까지를 혼합시켜 형성된 30℃에서 점도가 200~50,000cP이고 30℃에서 굴절률이 1.50~1.57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조성물.	나의 반복단위를 갖는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20~90중량%, (b) 디알릴 프탈레이트, 디알릴 이소프탈레이트, 디알릴 테레프탈레이트, 디알릴 아디프에이트, 트리알릴 (이소)시안우레이트 및 트리알릴 트리멜리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의 다 알릴에스테르 모노머 10~80중량%를 혼합시켜 형성된 30℃에서 점도가 200~5,000cP이고 30℃에서 굴절률이 1.50~1.57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조성물.  구조식 I, II, III (생략)	감축임 (c)정정 : (c)성분 혼합비를 볼때 (b),(c)성분의 최저성분의 합이 100%가 되려면 (c)성분이 0%가 되어야 하므로 필수 구성이 아닌 임의구성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에 해당하여 감축임 / 5000cP는 수치범위 감소로서 감축  * 변경판단 (a)성분에 새로 포함된 유형의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는 정정전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정전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자명하다고 볼 수 없어, 정정전의 상위개념중 최초명세서에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을 정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서 확장 또는 변경임. <sup>9)</sup>  * 독립특허요건 판단 (a)정정에 의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하여 출원시 특허받을 수 없음

\* 상기 판결에서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의 경우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더라도 만일 그 하위개념이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명세서상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정정은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실시하였다.

### 5. 접착제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日최고재 91.3.19. 선고 87행즈109 판결
o 상세한 설명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예가 기재됨 - 청구항은 고정부재라고 기재되어 있음	상세한 설명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부분만을 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고정부재에 접착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이다.

\* 청구항을 정정하지 않고도 1호인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 사례이다.10)

9) 도식화하면 【상세한 설명 a1,a2,a3 / 청구항 A】에서 청구항 A를 A'로 정정한 것으로서 A에는 a1,a2,a3,a4,a5,a6 ...이 모두 포함되고 A'에는 a1,a2,a3,a4,a5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A'에 포함되는 a4,a5는 기술적으로 a1,a2,a3와 다를 경우이다.

10) 본 최고재 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마키노 도시야키 변호사는 ‘특허청구범위가 고정부재인 이상, 접착제를 고정부재로부터 제외 시킬려면 청구항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본건의 정정은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음(특허소송연구 1999년 제1집 p87)

## IV. 오기정정과 관련된 사례 및 평가

### 1. 파일직물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76. 8. 24. 선고 75후5 판결 (정정)
지경사4본, 파일경사8본을 기본조직으로 구성된 파일직물의 구조	지경사4본, 파일경사4본을 기본조직으로 구성된 파일직물의 구조	오기정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변경임 <sup>11)</sup>

\* 관련사건(권리범위확인)으로 75후8 판결에서는 이건(지경사 4본 / 파일경사 8본)과 확인대상발명(지경사 4본 / 파일경사 4본)을 대비하였는데 양자는 완전히 효과가 다르고, 이건의 파일경사 8본이 파일경사 4본의 오기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건은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75후5 판결에서 “오기정정으로 본다 하더라도”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건을 오기정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알킬렌기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日최고재 72, 12, 14, 선고 소41(행쓰)1호 판결
A는 분지를 가지는 알킬렌기	A는 분지를 가질 수 있는 알킬렌기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하여도 제3자와 관계에서는 도저히 동일하게 논할 수 없음. 본건 정정은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임

\* 상세한 설명에는 A는 분지를 가지는 알킬렌기와 A는 분지를 가지지 않는 알킬렌기 모두 기재되어 있어 정정전 발명은 전자만을 청구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sup>12)</sup> → 정정전 기재는 오기가 아니다.

### 3. 히터코일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7. 6. 1. 선고 2006후2301 판결(무효)
스위칭 트랜지스터(Q4)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Ra)	스위칭 트랜지스터(Q4)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릴레이코일(Ra) 또는 코일(Ra)	명세서 및 도면 전체를 볼 때 정정전 기재가 명백한 오기로 볼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오기정정이 아니고 정정으로 인해 새로운 구성 및 효과를 가지므로 변경에 해당

\* 본건 정정은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11)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중 어디에서도 해당되지 않아 정정불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12) 우리나라라면 각호요건(감축, 오기정정, 석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정불허함

#### 4. 과자 병생지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日최고재 72.12.14, 선고 소41(행쯔)46 판결
과자 제조시 병생지의 냉장온도를 3~5 화씨로 기재됨	화씨를 섭씨로 정정	화씨 기재는 명료하고, 섭씨와 화씨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명세서 전체로 일관하여 화씨로 기재되어 있고, 당업자가 당연하게 섭씨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할 사정이 없어, 상기 정정은 변경임

\* 본건에서 3~5 화씨는 섭씨로 하면 영하 15~16도이므로 냉장온도가 될 수 없는데도, 당업자가 화씨를 당연하게 섭씨로 볼 근거(명세서의 기재 및 당업자의 사정)가 없다고 하여 변경으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업자가 본건의 화씨를 섭씨로 일의적으로 인식할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 5. 리모콘 사건

- 구성정의를 잘못하여(정의대로 하면 작동불능) 이를 고치는 정정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9. 5. 28, 선고 09후498 판결 (무효)
상세한 설명에 외피신호검출회로는 고역통과증폭기, 외피신호추출부, 비교기로 구성된다고 정의되어 있음	상세한 설명의 외피신호검출회로의 정의에서 비교기를 빼고, 비교기는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 대한 예이다 라고 정정함	* 등록명세서 도면 등을 볼 때 외피신호검출회로에 비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비교기가 외피신호검출회로에 포함되면 작동불능이므로 비교기를 외피신호검출회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오기임을 당업자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해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항 1 — 외피신호검출회로 히스테리시스 비교기 —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	* 청구항은 정정하지 않음	

\* 특허법원에서는 외피신호검출회로에서 비교기를 빼면 제1항에 외피신호검출회로의 구성이 줄어들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되어 정정인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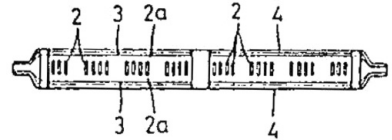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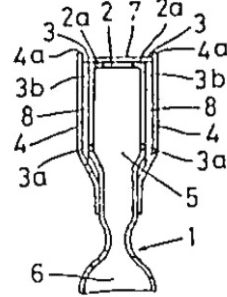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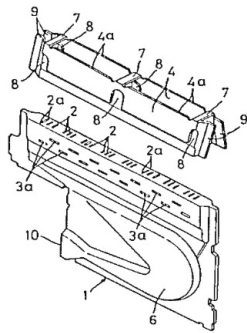
→ (고역통과증폭기+외피신호추출부+비교기) +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로 하면 작동불능이 된다는 점에 대해 특허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음

### V. 석명과 관련된 사례 및 평가

#### 1. 가스버너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6. 7. 28, 선고 04후3096 판결 (무효)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2)을 형성하고, 이 주화염구멍(2)의 양측에 부화염구멍(3)을 형성한 것에 있어서,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2)과 부화염구멍(3)과의 사이에 부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2)을 형성하고, 이 주화염구멍(2)의 양측에 부화염구멍(3)을 형성한 것에 있어서,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 주화염구멍(2)과 부화염구멍(3)과의 사이에	정정1은 명세서 도면을 볼때 오기정정이 명백 정정전 “부화염구멍(3)의 외측에 위치한 측면(4):에서” 외측에 위치한 “이라는 기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측면자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6. 7. 28. 선고 04후3096 판결 (무효)
화염구멍부(2a)를 형성하고, 부화염구멍(3)의 외측에 위치한 측판(4)을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서 상측으로 돌출시켜서 된 가스버너.	무화염구멍부(2a)를 형성하고, 가스버너 본체(1)의 양측에 측판(4)을 설치하여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되, 측판(4)을 가스버너 본체(1)의 상면에서 상측으로 돌출시켜서 된 가스버너.	가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는 것과 부화염구멍(3)을 가스버너의 다른 부품에 의해 형성하고 그 외측에 측판(3)을 설치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명료한 기재이나, 이건 명세서 전체를 보면 위 기재는 전자만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전자로 정정한 정정2는 석명이고,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정정2는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화염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이 넓게 청구된 것을 줄이는 청구범위 감축으로 볼 여지도 있음. 감축으로 보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고 석명으로 보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는 큰 차이가 있다.<sup>13)</sup>

## 2. 고무제품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5. 9. 9. 선고 04후1182 판결 (무효)
고무제품과 시멘트를 결합하는 구조에 있어서, 고무제품의 하부에 다수의 시멘트 결합부를 형성하고, 상기 시멘트 결합부와 시멘트를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가 결합된 고무제품.	고무제품과 시멘트를 결합하는 구조에 있어서, 고무제품의 하부에 다수의 시멘트 결합부를 형성하고, 상기 시멘트 결합부에 시멘트가 양생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가 결합된 고무제품.	시멘트와 고무제품의 결합관계가 총괄적 상위개념으로 기재된 것을 양생이란 결합수단을 추가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양생결합의 상세한 조건들을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되어 있음

\* 정정전 권리에 정정후 권리가 포함되므로 청구범위의 감축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 '06. 10. 1. 무효심판청구사건부터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시 무효대상 청구항을 정정하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축인지 석명인지의 구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독립된 정정심판에서는 독립특허요건 적용으로 여부로 인해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 3. 수지조성물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sup>14)</sup> (정정)
<p>다가(多價) 알콜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하기 일반식의 1가(一價) 산과 다가 알콜의 하이드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30~70몰% 또는 다가 알콜과 유지로부터 유도된 지방산과의 유도체를 다가알콜의 하이드록시기의 30~70몰% 되게 반응 시킴에 의하여 수득한 40~90중량부의 하나나 그 이상의 오리고머(1)와 분자내 적어도 한 개의 중합성 이중결합을 가진 10~60중량부의 중합성 단량체(2)로 구성된 수지 조성물.</p> <p><chem>HOOC-(X)-C(=O)-O-C6H4</chem> (식중에서 X는 2-3 탄소원자를 가진 α, β- 불포화 탄화수소임)</p>	<p>다가알콜 및 일반식 <chem>HOOC-(X)-C(=O)-O-C6H4</chem> (단, X는 탄소수 2 또는 3의 α, β- 불포화 탄화수소기)로서 표시되는 1염기산을 에스테르화하여 얻어지는 오리고머(i) 또는 다가알콜, 다가알콜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30~70몰% 의 유지로부터 유도된 지방산 및 다가알콜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30~70몰%의 일반식 <chem>HOOC-(X)-C(=O)-O-C6H4</chem> (단, X는 탄소수 2 또는 3의 α, β- 불포화수소기)로서 표시되는 1염기산을 에스테르화하여 얻어지는 오리고머(ii) 40~90 중량부 및 분자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중합성 2중 결합을 갖는 중합성 단량체 10~60중량부를 함유하여 이루어진 수지 조성물</p>	<p>본건 상세한 설명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청구범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료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하는 것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고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렇게 심리하지 않아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서 파기<sup>15)</sup></p> <p>→ 석명에는 해당되나, 변경에 대해서는 기준만 실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p>
<p>문장이 너무 이상하여 조성물의 성분과 비율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불비임</p>	<p>수지조성물의 성분과 비율이 명료하게 해석됨</p>	<p>석명에서는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독립특허요건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실시한 부분은 잘못</p>

\* 판결문에는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던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실시하였다.

→ 본건은 권리범위 파악이 불가능한 현저한 기재불비 청구항을 상세한 설명에 제대로 기재된 발명대로 정정한 사안이다. 이를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독립특허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허요건 테스트를 받지 못한 채로 소급효가 부여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고, 보정과 정정의 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문제를 가진다.

### 4. 양모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특허법원 98. 9. 17. 선고 98허2214 판결 /미상고 확정
<p>섬도가 16.43μ이하의 양모원료를 선별하는 단계; 상기 선별된 원료의 공급량을 조정하고</p>	<p>섬도가 16.43μ이하의 양모원료를 선별하는 단계; 상기 선별된 원료의 공급량을 조정하고</p>	<p>출원시의 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보정하다 잘못된 부분이 들어간 것을 고치는 것이므로 오기정정이다. 그리고 내</p>

14) 본 판결은 석명과 변경의 판단 기준에 대한 리딩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15) 파기된 이후 항고심판소는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을 허가하였음.

정정 전	정정신청	특허법원 98. 9. 17. 선고 98허2214 판결 /미상고 확정
<p>코우머의 밀도를 조밀히 하며, 전압공정에서의 작업시간을 종래의 1차 3, 5시간에서 1차 12시간으로, 종래의 2차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수분율은 종래의 9-10%에서 13-15%가 되게 한다. 종래의 맵글(Mangle), 습윤 및 건조로 이루어지는 스폰징 공정을 오픈연속세용, 맵글 및 건조로 이루어지는 상기 선별된 원료를 정방하는 단계; 상기 원료의 표면에 BAYLAN NT층을 형성하고 이 층이 염료를 흡수·용해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료가 섬유 내부로 침투되게 하는 저온염색법에 따라 염색하는 단계; 및 마이크로 실리콘 조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실리콘을 섬유 내부에 침투시킨 후 미립자를 팽윤 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모 초세사의 제조방법.</p>	<p>코우머의 밀도를 조밀히 하며 전방공정에서는 슬라이버를 8가닥, 3가닥 및 3가닥으로 세 번 더블링하고 드래프트율을 7.9, 7.6 및 7.5로 드래프트하며 직경이 50mm 이하의 링을 사용하며 40번 이하의 트라벨라를 4500-5000의 rpm으로 조정하고 경도가 70°인 검로울러를 사용하여 상기 선별된 원료를 정방하는 단계;</p> <p>상기 원료의 표면에 BAYLAN NT층을 형성하고 이 층이 염료를 흡수·용해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료가 섬유 내부로 침투되게 하는 저온염색법에 따라 염색하는 단계; 및 마이크로 실리콘 조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실리콘을 섬유 내부에 침투시킨 후 미립자를 팽윤 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모 초세사의 제조방법.</p>	<p>용을 보아도 상세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모순이 되고 문장이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맥상 불명료한 기재에 해당함.</p> <p>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 확장 변경했는지 여부 살펴보면</p> <p>→ 원료를 정방하는 단계의 공정을 구체화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 이 부분 대신 본건 정정처럼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면 이건 정정할 부분이 원고가 구체화하려고 한 어떤 특정한 기술적 구성과 어떻게 상이한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없어, 결국 이 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p>

- \* 본 판결은 “일단 현저한 기재불비로 등록되면 상세한 설명에 제대로 기재된 바에 의해서 정정한다 하여도 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기재불비로 무효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87후63 판결과 사실상 다른 취지의 판시임.
- \* 너무 현저한 기재불비 상태로 청구범위에 기재되면 상세한 설명 참조도 불가능하므로 그 권리범위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정을 허가하면 아예 새로운 권리가 소급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제3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바, 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권취기 사건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7. 5. 10. 선고 06후3991 판결 (정정무효)
<p>〈생략〉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있어서, 실 인출림(12)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는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16)에 의해 지지대(16)의 인입 경사로(17)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 〈생략〉 특징으로 하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p>	<p>〈생략〉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있어서, 실 인출림(12)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16)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대칭 덮개(23)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16)에 의해 지지대(16)의 인입 경사로(17)의 방향에서 인접하게 되고, 〈생략〉 특징으로 하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p>	<p>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생략〉 지지대와 원주표면의 결합관계는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지지대와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이라는 구성요소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고, 지지대와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원주표면과 지지대의 결합관계는 지지대가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이</p>

정정 전	정정신청	대판 07. 5. 10. 선고 06후3991 판결 (정정무효)
		<p>해되므로, 원심 판시의 정정사항 ①은 지지대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구성인 점을 명확히 한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으로 봄이 상당하다.</p> <p>* 대법원 판결에서는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원심판결은 수긍이 간다고 결론 맺고 있음</p>

\*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간의 결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확하게 기재된 바에 따라 정정하면, 석명이고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 원심판결<sup>16)</sup>에서는 정정전 제1항은 상세한 설명/도면을 보충하면 그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정정은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그 정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정정전후 보호범위에 변경이나 확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1. 3 |

16)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5허9473 판결

2011

#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대한민국 여성발명품박람회

##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세계 여성 발명인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명 아이디어를 거르고 심사, 수상하며  
여성 발명품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여성발명대회!  
여성 발명·기업인들의 우수한 발명품 및 생산제품을 전시하여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 발명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5월 4일(수) ~ 7일(토)
  - 장 소 : COEX 1층 A홀
  - 참가대상
    - \* 세계여성발명대회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중인 여성, 여학생(만 18세 이상) 및 여성 기업인의 발명품
    - \* 여성발명품박람회 : 여성 발명인, 여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업체
  - 모집기간 : 2011년 3월 31일(목)까지 (선착순으로 심사, 선정되므로 신청 마감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행사 홈페이지(www.kiwie.or.kr)에서 온라인 등록 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kiwie@paran.com) 접수
- ※ 상시 행사와 함께 「2011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포럼」과 「2011 세계여성발명기업인 워크샵」도 개최됩니다.



- 주최 : 특허청
-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

**문 의**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전 시 사 무 국 : 02-780-0863

# 주요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전 승 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최** 근 주요국 정부는 실질적인 국부의 창출 주체인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미국의 親 특허(Pro-Patent) 정책 추구, 일본의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추진, 중국의 지식재산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건설과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 유럽연합의 EU 차원에서의 제도통합 등 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국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친 특허정책(Pro-Patent)<sup>1)</sup>을 강구하고 관련 행정체계를 형성해 왔다.(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85) 그동안 미국의 지식재산정책은 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민간단체 등 정부 내외 모든 관련 기관들의 참여

1) 그동안의 미국의 친특허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확충과 미국 정부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권한을 확대했다. 둘째, 미국의회는 주도로 특허사건등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였다. 셋째, 특허법 조항을 개정하여 특허의 재심사제도(Reexamination system)를 도입하고 특허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였다. 넷째, 바이오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신기술에 있어서 특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연구물의 미국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바이돌법(Bayh-Dole Act)을 입안하였다. 여섯째, 지식재산권 문제를 미국의 총체적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아래 이루어져 왔다.<sup>2)</sup> 특히 미국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은 통상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보호정책의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관련 정부 조직들을 조정 통괄해왔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특징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 및 민간 주도형을 지향해왔다는 것이다. 즉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를 활용해 왔으며 위원회 활동의 최종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향후 중요한 정책적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산업계의 요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USTR을 축으로 각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원활한 의견수렴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위원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은 PRO-IP법안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자문위원회(IP Advisory Committee)와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 IPEC)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 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guidance) 아래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IPEC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의 종합지휘 권한 및 공동 전략 기획 마련 권한을 법령상 보장 받고 있어 STOP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이 미국 대통령과 IPEC에 의해 수립되어, IPEC가 주재하는 관련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IPEC가 각 부처의 지식재산행정을 주도하는 전담조직이자 조정기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는 조화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대통령실은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2개의 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s)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시니어 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Senior IP Advisory Committee)’는 지재권집행조정관(IPEC)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의 지재권집행관련 연방정부기관<sup>3)</sup> 장관 또는 차관급으로 구성되며, PRO-IP Act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재권종합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의 수립과 집행을 촉진하고 지재권집행조정관에 자문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지재권집행자문위원회(IP Advisory Committee)’는 지재권집행조정관(IPEC)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재권집행 관련 연방정부 각부처 및 집행기관 또는 부서<sup>4)</sup> 대표로 구성되며, 지재권 종합전략 개발 및 관련 정부기관간 지재권집행 플랜, 집행활동 통계, 지재권보호 협력증진을 위한 권고안 등 정보 공유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내각 수립 이후 ‘지적재산산업국전략’을 수립하고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주관 하에 산업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이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결정된다.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장은 총리이며 부분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등 4명이다. 본부원은 모든 각료와 민간전문가 10

2)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관련한 기관을 보면, 행정부에는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국제무역관리국), 특허상표청(PTO), 법무부 형사국 컴퓨터범죄및지식재산권과(CCIPS), 재무부 내의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이 있고, 입법부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포함 각종 위원회, 하원 법사위원회 포함 각종 위원회, 의회도서관내 저작권청 등이 있으며, 사법부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소유자 단체(IPO), CPT(NGO) 등의 민간단체가 존재한다.

3) DOS(국무부), DOT(재무부), DOJ(법무부), DOA(농림부), DOC(상무부), DOHHS(건강·복지서비스부), DOHS(국토안전부), OMB(예산처), USTR(무역대표부)

4) (행정부) OMB, DOJ 관련 부서(민,형사부), FBI, USPTO, USTR, ITA, DOC 관련부서, DOS 관련부서(경제·에너지·비즈니스국, 미국국제개발청), CBP, ICE, FDA, DOA, DOT, 기타 지재권 침해 단속과 관련된 집행기관으로 대통령이 정한 기관 또는 부서 (의회) 저작권등록청 청장 또는 위임받은 대표

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며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두어 지식재산행정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지식재산전략본부를 두어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전담 조직은 없다. 따라서 조정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리가 직접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창고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결정에 있어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식재산전략본부의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개선<sup>5)</sup>을 통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격형(catch-up) 경제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식재산행정체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추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행정체계 형성에 있어 총리의 영향력이 큰 것은 일본의 관료제가 집권적이어서 수평적 협의 조정보다는 수직적 명령 통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지식재산전략본부 간 협조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지식

재산전략전문조사회 운영을 통해 국가 R&D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식재산전략본부에 제출하면,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는 연계체계를 가진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중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중국은 자본주의 도입 역사가 짧아 1990년대 이전까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미비했다. 1980년대 이후 각종 지식재산관련 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1월 우이 부총리 주도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여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를 만들고 2008년, 이 전략이 전국인민대회에서 경제정책 다섯 번째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이 국가의 전략적 지원 차원으로 끌어올려졌다.

2008년, 제정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업무부연석회의(國家知識產權戰略實施工作部際聯席會議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fice)<sup>6)</sup>로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사무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중국은 조화형의 지식재산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은 지식재산행정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상황에 따라 단계적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 전략 및 집행 업무가 국가 전략 수준이 되기 전으로 중국최고지도부가 아직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사무국을 우선 상무부에 설치하였다. 지식재산권국의 위상이 아직 여러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들의 상충하는 이해 및 제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지식재산 전략 및 집행 업무가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려지자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지식재산권국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편하였다. 즉 제정위원회 업무를 지식재산권국으로 이관하여 사무국을 상무국에서 지식재산권국으로 옮기고, 연락사무소격인 보호협조사(保護協調司)<sup>7)</sup>를 국

5) 관세정률법('03.4)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국경이동을 원천봉쇄하고, 저작권법을 개정('04.4)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05)하고, 지재권 위반사항에 대한 통관조치·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6) 연석회의는 지식재산권국이 주도하고 지식재산권 국장이 소집한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부처간연석회의의 참여부처는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안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위생부, 해관총서, 질량검사총국, 판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외교부, 교육부, 공업신식화부, 사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농업부, 문화부, 국가자원개발위, 공상총국, 광전총국, 임업부, 법제처, 중국과학원, 고법원, 고등검찰원, 총장비부 등 28개 기관으로 구성되고, 연석회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장(차관급)이 주재하므로 실제 각 부처의 참석범위는 부부장급(차관급)으로 이루어 진다.

가 지식재산권국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백·천·만 지식재산권 인재공정”(‘07~‘10)<sup>8)</sup> 등 정부차원의 인재육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국은 ‘08년 수립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의 이행을 위해 특허 개발·운용·보호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자 ‘전국특허발전전략(2011~2020)’<sup>9)</sup>을 제정하였다. 동 전략은 특허제도 및 특허자원을 규율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대폭 제고하여 중국을 특허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1) ‘20년까지 매년 백만 명당 국내의 특허출원의 4배 증가를 유도하고 기업의 특허출원 비율을 10% 이상 증가시키고, 2)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간 출원건수 200만 건과 발명특허 연간등록건수 세계 2위를 목표로 하며, 3) 전국 주요도시에 특허거래소를 설립하며 특허의 연간 교역액 1,000억 위엔(약 17조 원)을 유도하고, 4) 특허제도의 종합운영능력이 강하고 지재산 시장환경이 우수한 10개 시범도시를 건설하며, 5)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을 22개월 전후로 단축(‘10년 26개월)하며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3개월 전후로 단축하고, 6) 특허행정관리 및 집행 인재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특허심사 인재풀 9천 명, 전문변리사 1만 명 육성 등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EU의 지식재산행정체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P 정책과 관련한 기관 일반 현황은 <표7>와 같다. DG for Internal Market & Services의 Directorate D Knowledge-based Economy에서 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주도하여 입안·집행하고 있고, DG for Enterprise and Industry와, DG for Research, DG for Trade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지식과 기술의 국내외 이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DG for Trade에서는 EU의 지재산 대외정책을 총괄하며, 해외지재산 보호 강화, ACTA 대응, IP dialogue 운영, 지리적 표시, 생명자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 EU 집행위원회의 IP 정책 관련 기관 일반 현황

Directorate-General	Directorate	Unit
Internal Market & Services	D : Knowledge-based economy	Copyright
		Industri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of IPR
Enterprise and Industry	D : Innovation Policy	Innovation policy development
Research	C : Knowledge-based economy	Private investment and technology platforms
		Universities and Researchers
Trade	E : Public procurement and IP, Bilateral trade relations	public procurement / Intellectual Property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포괄적 개념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근거·절차·관련 조직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1년~3년 등의 단위로 실행계획 또는 집행계획 등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EU 차원에서 2008년에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을 수립 및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계획에 해당될 수 있으며, 2010년 11월에 발표 예정인 “IP-Enforcement Action Plan”은 실행 또는 집행계획이라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내부 지식재산 관련 부서 간의 정책협조 및 조정 과

7)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보호협조처는 전략협조처, 산업전략처, 지역전략처 및 지식재산보호처의 4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처별 고유업무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

8)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매 2년마다 100명의 고급인재를 선발 국내외에서 교육하고, 각 省·市는 매년 500명의 전문인재 및 만여명의 기업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9) 全國專利事業發展戰略(2011~2020年) : 중국 지식재산권국(‘10.11월)

정을 살펴보면, 조정 및 합의절차를 보유<sup>10)</sup>하고는 있으나 IP control tower는 존재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와 개별 국가간 정책의 조정 및 집행력과 관련하여서는 Regulation 및 Directive<sup>11)</sup> 등을 통한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조정기능은 '통일성' 과 '고유성' 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조정기능이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실무위원(Commissioners)들과 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DG(Directorate General)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로서, 추진력 있는 조정과 통제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합의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태생적 특성에 의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적·통합적으로 IP 관련한 기본계획 등을 세우고 있지 않고 종합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으며, 개별 조직별로 필요시 실행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 3 |

10) Inter-service Consultation : 한 부서에서 기획된 Directive, Regulation, 정책기획(안) 등을 인터넷 온라인에 올리면, 관련부서에서 보고 의견을 제출하며, 기획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조정 및 합의 절차(process).

11) 'Regulation'은 발효와 동시에 국내입법과 동일효력을 갖는 강제성을 띠는 규정으로 국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Directive'는 강제성과 국가별 특성에 따른 고유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하나, 입법취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및 집행의 형태에 자율성 및 융통성이 인정된다.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갱신등록출원 [상표]** • 상표의 경우 권리존속기간이 10년인데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척특허/기본특허 [특허]** •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룩한 발명에 관한 특허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그 기술의 진보에서 명료한 진전을 보여주고, 종래 기술의 단순한 개량 또는 보완과는 구별되는 정도의 신규성 및 중요성을 갖는 발명에 관한 특허” 라고 정의하고 있음.

**개척 발명/기본 발명 [특허]** •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됨.

**개재권 [법일반]** • 미국특허법상 타인의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발행으로 새롭게 클레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권리.(미국)

**개시의무의 위반 [지재권일반]** •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함.

**강제실시권 [특허]** •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 관리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정부가 특허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규정. 최근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도하아젠다가 채택되어,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사례를 통해 본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 변 응 재

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및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 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중국 Junhe 법률사무소 및  
현대차 중국지주회사 근무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서울대학교 및 Stanford Law School LL.M 졸업

## 들어가는 글

중국의 법률 관련 상황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 방법도 불충분하다는 비난이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는 많으나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소개 및 분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이를 통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실태를 보다 실감나게 느끼게 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sup>1)</sup>.

1) 아래 소개하는 사안들의 개요는 주로 중국 언론 매체나 관련 서적에서 소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소 다를 수 있다.

## 특허(전리<sup>2)</sup>) 침해 사례

### 제소 전 금지명령 사례

특허 침해 관련 사례로서 비교적 유명한 것은 한국 Zalman사가 중국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제소 전 금지명령(訴前禁令)을 청구한 사안이다. 외부에 알려진 본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 Zalman사는 컴퓨터 방열설비 개발 전문업체로 2002년 2월 방열기 제품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고 2005년 8월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후 Zalman사는 선전차오핀산회사(深圳超頻三公司)가 생산한 'PCCOOLER 차오핀산(超頻三)' 브랜드가 자사의 특허 제품과 매우 유사하며 제품의 특징이 특허 제품의 보호범위를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선전차오핀산 회사는 2005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컴퓨터 방열기 설비 분야에서 새로이 부상한 업체이다. 이에 Zalman사는 2006년 7월에 선전(深圳) 중급인민법원에 '제소 전 특허권 침해행위 중단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Zalman사는 법원에 보증금으로 현금 인민폐 200만 위안을 납부하였다. 2006년 8월 선전 중급법원은 Zalman사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선전차오핀산 회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 관련 행위의 중단과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중지 등을 명령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선전차오핀산회사의 관련 모델의 금형, 재고제품, 장부, 증빙서류 등을 봉인 보관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금지명령 판결은 선전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제소 전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

다. 첫째, Zalman사가 제소 전 금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현금 인민폐 200만 위안이라는 상당한 거액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둘째, 본건 금지 명령 판결이 선전 중급인민법원이 '처음으로' 제소 전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라고 하는 점이다. 실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제소 전 금지명령(우리나라 법률상 가처분과 유사)은 본 판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처분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오고 또한 현금 대신에 보증보험 증권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로 하여금 거액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sup>. 실무상 이러한 거액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본건의 성공은 아마도 이러한 Zalman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 자동차 관련 사례들

아마도 중국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건만큼 유명한 사건들도 드물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도 GM 대우 마티즈 자동차 사건일 것이다.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2년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체리(Chery, 치루이)자동차는 GM대우의 마티즈를 거의 그대로 본뜬 'QQ'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체리(奇瑞)의 QQ는 차체와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마티즈를 똑같이 모방하여 진짜 마티즈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했으며, 이에 2004년 12월 GM대우는 체리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GM대우는, 체리가 GM대우의 상업기밀을 복제 사용하여 생산한 QQ를 자사 개발 제품이라 자칭하고 있으며 중국 지적재산권국 특허심사위원회에 출원한 Chery QQ의 외관 디자인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QQ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과 공개 사과, 경제손실 인민폐 8,000만 위안의 배상,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 수익금 전액 몰수 등을 법원에 요구하였다.(2005년 5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안건을 접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중국 상무부와 중국 지적재산권국은 "중국 법률제도와 GM이 제공하는 증거를 검토할 때, 현재까지 체리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없다"고 발

2) 흔히 '특허'로 번역되는 중국의 '전리(专利)'는 우리나라법상의 특허와 달리 발명, 실용실안,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글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임시조치(행위금지명령,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 결정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의 현재 또는 장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2)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담보제공 여부 (4) 임시조치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표하였으며, 체리는 이미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을 포함하여 24가지 특허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다. 이후 지루한 법정 외 공방 끝에 GM과 체리는 결국 화해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2005년 11월 GM대우, GM자동차, 체리 등 세 회사 간의 분쟁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자동차 관련 지적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외국기업이 이긴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Neoplan 버스 사건인데 외부에 알려진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4년 9월 23일에 독일 버스 회사인 Neoplan은 Starliner Coach bus의 디자인 특허를 획득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봄에 Neoplan은 Zhongwei Bus & Coach group (버스생산자), Zhongda Industrial Group (모회사), Beijing Zhongtong Xinhua Vehicle Sales Co., Ltd. (agent)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청구액 : 인민폐 4천만 위안) 이 소송을 위하여 원고인 Neoplan은 인민폐 1백만 위안에 피고의 차량(A9 model)을 구입하여 공증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들은 Neoplan을 상대로 2건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독립된 R&D 기록 및 별도의 디자인 특허 취득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결국, 2009년 1월 14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들에 대하여 인민폐 21,160,000 위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중국 내에 미리 특허 등록을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GM대우 마티즈 건에서는 체리가 QQ와 관련하여 이미 2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Neoplan 건에서는 Neoplan이 먼저 중국에 특허 등록을 한 상태였는데 두 사건 모두 먼저 중국에 특허 등록을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자동차들이 해외로 수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Fiat Panda 사건이다.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중국의 장성(长城)자동차가 '정령(精灵)'이라는 브랜드의 승용차를 이태리 자동차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이에 대하여 Fiat는 자사의 'Panda' 브랜드의 승용차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이태리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하였다. 즉, 2007년 6월 Fiat는 정령(精灵)이 Fiat Panda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석가장시 중급인민법원(石家庄市中级人民法院)에 소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두 승용차가 앞좌, 우의 모양이 다르고 특히 소비자가 주목하는 차 전면과 후미가 다르다는 이유로 Fiat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판결은 2008년 12월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 확정) 한편, 이와 달리 중국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10일 전에 이태리 법원에서는 정령(精灵)이 Fiat Panda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EU 내에서의 선진, 광고,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한편, 2009년 9월에 장성(长城)자동차는 Fiat가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장성자동차 내부 공장 및 연구실 등에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는 등 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Fiat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Fiat Panda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기업들의 국제화에 따라 중국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국 외의 제3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 상표권 침해 사례

###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사례

2002년 12월에 토요타 자동차회사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당경쟁을 이유로 체리자동차회사와 북경연창자동차무역유한책임공사(北京联创汽车贸易有限责任公司) 및 북경아진위업자동차판매센터(北京亚辰伟业汽车销售中心)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토요타 측은 체리자동차가 생산한 美日자동차의 Hood, 핸들, 타이어, 트렁크 등 선명한 위치에 있는 자동차 로고가 토요타자동차의 로고와 매우 흡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위 두 자동차 판매회사가 대외홍보에서 사용한 홍보문에도 토요타 관련 오도 문구가 들어 있어 소비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정당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민폐 1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체리자동차는 ‘민족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구호를 내 새우고 중국 자동차산업 수호자이자 민족영웅으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결국, 2003년 연말,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토요타의 청구를 기각시켰는데, 판결 이유는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시 제품에 대하여 갖는 관심으로 양사 브랜드 로고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상 차이점을 분별하는데 충분하므로 오해 발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정당경쟁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외홍보시 사용한 문구에는 과대 선전한 점은 있으나 해당 국내 법률에 따라 허위선전 정도는 아니고 소비자들의 오해도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외국회사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 일본 혼다가 중국의 이륜차 대기업인 중경 리판홍다(重庆力帆轰达)실업의 등록상표인 ‘力帆·轰达’에서 ‘轰达(Hong-da)’ 부분의 발음이 혼다(Hond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2009년 7월 8일 혼다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안이 있다. 혼다는 1982년에 중국에서 ‘HONDA’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그 후 1999년에 중국 현지 기업인 리판홍다사가 ‘力帆·轰达’를 오토바이 등의 상표로 등록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혼다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상표심사위원회는 ‘轰达(Hong-da)’와 ‘HONDA’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혼다는 ‘HONDA’라는 로고로 인식되고 있어 오인되거나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혼다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혼다가 국가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소를 하였다. 이러한 혼다의 청구에 대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轰达(Hong-da)’와 ‘HONDA’의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유사한 상품에서는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轰达’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면서 국가상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두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상표권 침해 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중국법원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실무상 약방의 감초처럼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됨을 알 수 있다<sup>4)</sup>.

###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 사례

중국에서도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유명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P&G 사례를 소개하면, 2000년 2월 21일, 미국 P&G사는 중국 상해의 진현지능과기발전유한공사(晨铉智能科技发展有限公司)를 상대로 부정당경쟁을 이유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 일찍이 1976년 5월, 스위스 P&G사는 중국에서 ‘safeguard’ 상표를 등록(비누제품)하였으며, 1992년8월, 미국 P&G사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심사비준을 거친 후 스위스 P&G사로부터 ‘safeguard’ 상표권을 양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스크린 도어, 금고 등 안전방지설비 판매업체 (설계, 설치, 정비작업 진행)로서 1999년 1월 18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신청하여 ‘safeguard.com.c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인민법원에서는 심리 후 피고에게 즉시 해당 도메인 이름 사용을 중지함과 아울러 판결 효력발생일 15일 내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것을 판결하였다.

다음으로, Pfizer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fizer는 Ms. Yang이라는 중국인이 ‘Pfizer Dalia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알고 산둥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손해배상 인민폐 5,000 위안 청구 포함) 이

4)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는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행위 (2) 유명 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 장식을 자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이 유명상품과 혼동하고 구입자가 당해 유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3) 자의로 타인의 기업 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타인의 상표로 인정하게 한 행위 등을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에 대하여 피고는 'Pfizer'는 유명상표가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Pfizer는 중국 시장에서의 명성, 광고 투자, 마케팅 활동, Pfizer 상표 제품의 시장점유율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2008년 4월 결국 법원에서는 Pfizer를 유명상표로 인정하고,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말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만, Pfizer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또는 Ms. Yang의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법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유명 상표를 보유한 외국기업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이다.

## 마치는 글

이상과 같이 중국의 특허 침해 사례와 상표권 침해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도 어느 정도 중국의 사법 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미국 P&G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련 판결은 2000년 당시 우리나라도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사법실무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때에 나온 판결로서 중국의 사법부가 때로는 우리나라 보다 더 앞서 나감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중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Zalman 사례와 Neoplan 사례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이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소 전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거액의 현금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한 Zalman의 용기와 상대방의 버스를 구매하여 증거로 제시한 Neoplan의 적극적 자세는 향후 승소 판결로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되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에는

사건이 외국회사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GM대우 마티즈 사건이나 토요타와 체리의 상표 분쟁 등의 경우 모두 민족 지적재산권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외국회사에 불리하게 사건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외국회사로서는 사건의 처리는 되도록 조용히(중국어 표현으로는 '低调하게')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언론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2011. 3 |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사유예신청(늦은심사)이란  
무엇입니까?

-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 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 후 6개월이내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심사청구 가능시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 제의 대상으로는 분할, 변경,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 심사유예신청이 있기 전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 청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결정계 심판청구 기간은 2009. 1. 30 이후부터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재외자)의 경우 1회 2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법정기간 연장)"를 제출하고 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 "우선심사"라 함은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2009. 4. 1부터 시행되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경우에 한하며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다 3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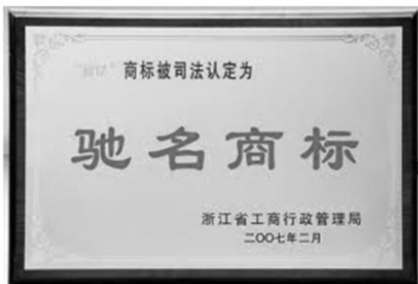
#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

## 유성원

현) 지심IP&COMPANY 대표 변리사  
2010년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전자부 변리사  
2009년 중국 북경 MING&SURE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담당 변리사  
2005년 유미특허법인  
2004년 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중국에서의 브랜드 경영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바로 저명상표 인정제도이다.

중국 저명상표 인정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하여 제한적인 등록금지효만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 상품의 영역에 대하여 등록금지효력 뿐만 아니라 사용금지효력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의 저명상표(著名商标 chi ming shang biao : 치명상표) 제도는 법적 절차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잡성 및 과도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저명상표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이 제도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 중국 저명상표 인정 제도 개관

### 법 제도의 변천

중국은 1986년 ‘파리조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1993년 개정 상표법에서 모방상표, 기망상표에 대한 등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6년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중국의 상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저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저명상표 인정 기준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를 인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에 한하여 상표국에 저명상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저명상표 인증을 받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별적인 상표권 분쟁 사안에서 저명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는 미등록 권리자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단점과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자국 국영 기업 보호 태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후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미등록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3년에는 종전의 ‘저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 규정’을 공포하여 현재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의 틀을 완비하게 되었다.

2003년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저명상표 인정 절차는 상표국에 출원과 같은 별도의 절차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표 분쟁 절차 중에서 저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저명상표임을 인정해달라는 주장 또는 변론을 제기하여 해당 개별 절차에서 저명상표를 인정 받게 된다. 즉, 하나의 독립된 절차에 의해서 저명상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표 분쟁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그 절차 내에서 저명상표 인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제도가 저명상표의 “인증(certification)”이었다면 현재는 저명상표의 “인정(recogni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저명상표 인정 루트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루트는 크게 세가지이다. 저명상

표 인정은 이 세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요청할 수 있다.

- 상표국에서의 상표 이의신청 절차 또는 상표평심 위원회에서 복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
- 상표 침해 사건 발생지의 시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상표 사용금지 청구 절차 진행 중
-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각 지방 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 또는 고급인민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

이와 같이 저명상표 인정 절차는 독립된 절차가 아닌 개별 상표 분쟁 사건 내에서 별도로 주장/변론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절차에서 저명상표로 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표 분쟁 사건과의 관계에서 대세효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절차에서 저명상표로 한번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인정 사실이 저명상표 인정에 강한 증거자료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당연히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저명상표의 인정 요소

중국 상표법 제14조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국 상표법 제14조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전(홍보) 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상표의 상품에 대한 매출 실적, 광고비, 홍보비 지출 내역, TV, 라디오 광고 전송 회수, 시장 점유율, 상표 관리 노력에 대한 입증 자료 등 매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저명상표의 인정 여부의 승패는 바로 영향력 있는 증거자료를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리인의 비용도 저명상표 인정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수집 및 가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 저명상표로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 -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보호

####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2항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함으로써 공중을 오인하여 당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누릴 수 있는 법적 효과의 핵심은 바로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등록금지효 및 사용금지효이다. 이는 중국 특유의 저명상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의 동일·유사 및 상품의 동일·유사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에 미친다. 그리고 저명한 상표라고 할지라도 상품이 비유사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타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사용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sup>1)</sup>.

하지만, 중국에서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등록 뿐만 아니라 사용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사용금지효를 인정하는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넓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도 모든 비유사 상품에까지 저명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을 오인하여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경업관계 또는 경제적 유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 영역에서 저명상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KODAK 사례)

### 대표적인 중국의 외국저명상표

현재까지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한국 기업의 상표는 SAMSUNG(텔레비전 수상기, 삼성전자), 竹盐(치약, LG생활건강), 好丽友(쿠키·캔디, 동양오리온)이다.

그외 외국 상표로는 듀폰(화학물품), 로레알(화장품), 랑콤(화장품), 엑손모빌(석유제품), Castrol(석유제품), 바이엘(의약품), 산요(전자기기, 냉장고, 가전제품), 질레트(면도기), 샤프(텔레비전), 카시오(손목시계), 노키아(휴대전화), 니콘(카메라), 미놀타(카메라), 델(컴퓨터), 인텔(컴퓨터 하드웨어), 모토롤라(통신장비), 엡손(프린터), 도시바(화상전화설비), 닛산(자동차), 렉서스(자동차), 토요타(자동차), 포르쉐(자동차), 페라리(자동차), 재규어(자동차), 혼다(자동차), 미쉐린(타이어), TISSOT(시계), 까르띠에(장신구, 보석), 휴고보스(의류), Mars(초콜릿), Prudential(보험), 디즈니(공공유원지), F1 FORM-ULA1(체육활동경기), 구글(인터넷 서비스), 맥도널드(패스트푸드), 스타벅스(커피숍), 스와로브스키(장신구) 등이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외국 기업의 중국 저명상표는 대략 100개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저명상표는 단 3개로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하겠다.

1)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이종상품 간에는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저명상표 인정의 실익 및 이용 전략

### 활용 및 준비 전략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저명상표 인정의 실익은 바로 비유사 상품 영역에까지의 넓은 보호 범위 인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명상표 인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매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중국 대리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대리인에 따라서 저명상표 인정에 대한 대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저명상표 인정 업무 실적 및 대리인 별 정부/사법 기관 내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로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증거자료 확보인데, 증거자료의 수집은 중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명상표를 인정을 위해서는 워낙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 홍보, 매출액, 통계자료, 설문조사 등에 대한 최소 5년 이상의 체계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상표국의 저명상표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증된 최소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매출액, 광고비, 홍보비 등에 관한 재무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의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 45개류 전류 출원

저명상표 인정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상표보호가 꼭 필요하다면 45개류 상품류 전부에 대한 출원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리인 비용과 예상 시간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유리한 쪽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꼭 저명상표 인정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유사 상품 영역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45개류 전부에 대한 출원의 경우 출원/등록 관

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45개류 전체에 대한 등록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며, 3년간 불사용할 경우 중국에서도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꼭 챙겨야 할 고려 요소이다.

## 마치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비유사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뿐만 아니라 “驰名商标”라고 표기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이 중국 저명상표 제도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가 중국에서 우뚝 서서 브랜드에 눈을 뜨고 있는 중국 소비 시장을 석권하는 소식들이 많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2011. 3 |

# 지금까지 없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시작!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없이  
존재시점과 위·변조 여부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만나보세요

[www.tradesecret.or.kr](http://www.trades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란

- 영업비밀로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시점과 원본여부를 입증해 주는 서비스

###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 코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전자지문을 가짐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한글, MS워드, 엑셀, 이미지, 동영상 등)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처

-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 실적, 재무자료, 투자계획,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등
- 기타 원본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 Column

- Zoom in
- IP-Trend
- 지식재산 경영전략
- 발명 365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 카라 사태로 살펴본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문제



전소정

현) 지심IP&COMPANY 파트너 변리사  
 현) 북경 MING&SURE 특허법률사무소  
 한국 IP DESK 대표  
 2008년 유미특허법인 상표팀 변리사  
 2005년 유니스특허법인 화학팀, 상표팀 변리사



**최** 근 걸그룹 대세인 '카라'가 갑작스레 소속사를 향해 계약 해지를 한다고 나섰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나선지 반나절이 지나서는 카라 멤버 중 2명(구하라, 박규리)은 기존 소속사에 남기로 입장을 번복하고 3명만 떠나기로 하면서 후자는 제2의 동방신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카라'가 계약 해지 소송이 불거지면서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한 달 전에 'KARA'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소속사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미리 손을 써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지에서는 KARA 상표 출원 문제와 동방신기 상표권 문제를 가지고 아이돌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 상표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속사정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 KARA의 상표권

우선,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한글 명칭이 아닌 영문 명칭인 'KARA'로 제9류(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등), 제35류(음악/노래가 수록된 앨범판매대행업 등), 제41류(연예인공연서비스업, 음반녹음업 등)에 2010년 12월 7일자로 상표 출원을 마쳤다.

번호	권면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태상동분류도형코드	출원인	대리인	명칭	전문
1	KARA	4020040029513 (2004.06.23)	4020050045902 (2005.08.23)			거절 28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2	KARA	4020040029512 (2004.06.23)				거절 25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3	KARA	4020040029511 (2004.06.23)				거절 18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의문이 드는 건 카라가 2007년에 데뷔한 것을 고려하자면 3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계약 해지 소송이 불거진 현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속사가 상표 출원을 마쳤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속사가 KARA 상표권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우선이겠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 부분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카라 구성원 및 그 부모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소속사로서는 모종의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KARA 정도의 유명세면 KARA 이름이 찍힌 기념 의류, 화장품류나 완구류 쪽에도 상표권을 확보할 만한데 이미 타업체에서 KARA가 데뷔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등록한 'CARA', '카라' 등이 존재하고 있어 소속사로서도 아쉽지만 그 분야까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동방신기의 상표권

과거 한류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동방신기는 현재 최강창민과 유노윤호 2인으로 구성된 '동방신기(예전 그룹의 명칭 그대로 '동방신기'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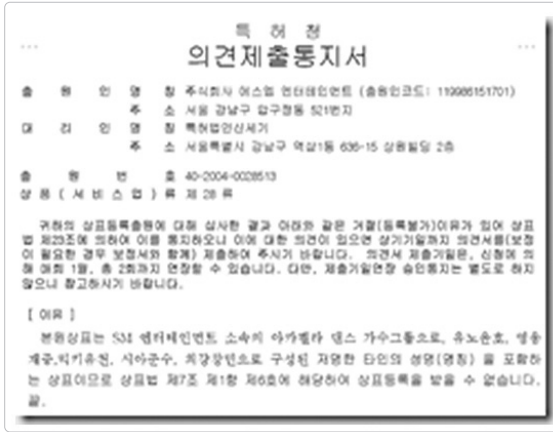


머지 멤버 3명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은 'JYJ'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각각 활동을 재개했다. 동방신기의 한자명은 "東方神起"로서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처음부터 한글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東方神起"라는 한자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했으며 현재 법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번호	권면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태상동분류도형코드	출원인	대리인	명칭	전문
1	東方神起	4020040029513 (2004.06.23)	4020050045902 (2005.08.23)			거절 28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2	東方神起	4020040029512 (2004.06.23)				거절 25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3	東方神起	4020040029511 (2004.06.23)				거절 18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4	东方神起	4020040026180 (2004.06.09)	4020050011843 (2005.03.10)	4006219380000 (2005.06.20)		등록 09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	
5	東方神起 T V X X K	4020030095382 (2003.12.13)	4020040048933 (2004.08.18)			포기 09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특허법인신세기	동방신기TVX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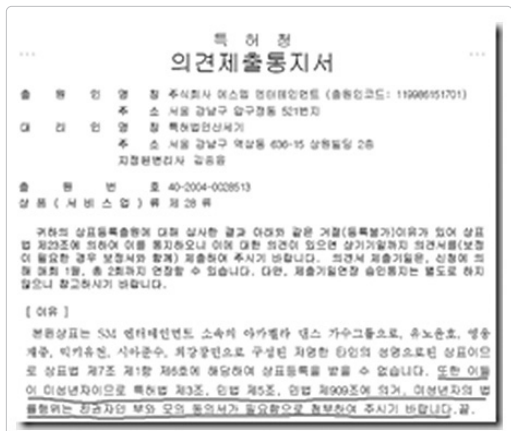
상표의 구성 자체로 보았을 때 상표등록을 거절할 분명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상품 분류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출원한 대부분의 상표가 거절되고 "東方神起"의 중국어 간체자인 "东方神起"만이 제9류(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등)에 등록되어 있었다. 특허청에 포대 신청을 하여 "東方神起"가 거절된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특허청에서 발급한 1차 의견 제출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方神起(출원번호 제40-2004-0028513호)”에 대한 1차 의견제출통지서〉



즉,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거절당한 것이다.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상표 출원을 한 것이라도 소속사와 동방신기는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이런 아이러니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 단서의 내용은 다름 아닌 그 저명한 타인의 허락을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멤버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또다른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하였다.

〈“東方神起(출원번호 제40-2004-0028513호)”에 대한 2차 의견제출통지서〉



즉, 동방신기 멤버들은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표출원에 대한 동의는 명백한 법률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2차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이었다. 이후 소속사와 동방신기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부모님들은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았고, 동방신기 상표는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되었다. 이 건은 제28류(완구류)에 대한 사건인데 나머지 제25류(의류 등), 제18류(악세서리 등)에 대한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거절결정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절이유를 통해 KARA도 이번 계약해지 사건이 모 멤버의 부모가 계속해서 그룹 활동 및 수입 배분에 불만을 제기해 왔던 것과 연관되면서 아이돌의 활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돌의 활동에는 아이돌, 아이돌의 부모님, 소속사간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동방신기 역시 자신들의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 ‘동방신기’ 상표를 부착한 의류, 악세서리, 완구류 판매 등에 대해서 소속사가 완전한 상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동방신기 멤버 부모들로서는 시원하게 동의를 해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화려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연습실에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로서는 데뷔 초기에는 소속사에 완전히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룹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소속사로서는 아이돌 그룹이 뜨고 난 뒤 수익 분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할 수단 중 하나로 어떻게든 소속사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두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모든 소속사에서 아이돌 그룹명에 대해 재빠르게 상표출원을 하지는 않는 편이라 데뷔 후 1년 정도 뒤

에야 부라부라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유명세에 따라 상표권 소속 여부에 대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속사와 소속 가수 간에 분명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아이돌 그룹명 상표권에 대한 소속사와 소속 가수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속사와 소속 가수 간에 그룹명 또는 각 멤버의 예명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소속사 명의로 그룹명을 상표 출원한다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룹명이 저명할 경우에만 그 그룹을 이루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명성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열심히 피땀 흘려 활동하여 유명한 스타가 된 그룹멤버들로서는 추후 소속사와의 문제가 생겨 소속사를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속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때문에 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가수의 그룹명이나 예명에 대한 상표권은 인격권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써 소속사가 아닌 가수들 본인의 권리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가수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소속사에게는 적어도 전속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속사와 각 소속 가수(연예인)은 계약 초기부터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을 계약으로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소속사와 소속 가수 모두 상생하는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이는 2009년에 발표된 공정 거래 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sup>1)</sup>>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1. 3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가수 중심)>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허청 스마트폰 앱 리뷰

발명카페/특허검색 App.



“발명카페 앱”은 2010년 국내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춰 발명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발명가들이 자주 필요로 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발명전용 어플리케이션이다.



## 머릿말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광풍은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지식재산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2010년 국내 IT시장은 다양한 개인화 기기의 보급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한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 또한 이에 발맞춰 발명가가 연구주제별 아이디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선보였다. 이에 특허청에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출시한 발명가 필수 어플 “발명카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 특허청 통합 특허정보제공 앱 “발명카페”

2010년 특허청은 특허검색과 모바일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연계하여 12개의 기능을 담고 있는 지식재산 종합 어플리케이션인 발명카페 앱을 출시하였다. 발명카페는 특허검색, IPC코드검색, 지식재산용어 사전, 발명다이아리, 수수료 계산 등 특허 정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특허청 “발명카페” 앱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다.



## 특허검색

발명카페 앱(이하 발명카페)의 특허정보검색은 국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모바일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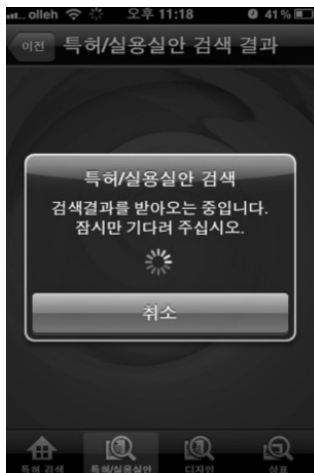
이 기능은 특허검색 앱으로 별도로도 제공되는데 이미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스토어에서 스마트폰 필수 어플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약 4만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발명가들 사이에서 인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특허/실용신안 검색 기능

특허검색의 기본적인 검색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알고 찾고자 하는 국문/영문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이고, 두 번째는 문서 번호(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다.

검색의 경우 “특실구분 + 검색항목 + 검색범위 + 검색키워드” 4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하는 형태로 제공 (단, 번호검색의 경우 전체 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키워드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 리스트가 출력된다.



\*특허청은 일반휴대폰과 PDA를 이용한 상표검색 서비스를 몇년간 제공해 왔으나, 고가의 무선인터넷 사용료와 느린 속도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스마트폰 열풍과 아이폰의 출시를 계기로 무선인터넷 사용료 인하와 WiFi망과 3G망의 품질향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검색결과를 받아오는 동안 서버와의 통신에 실패하거나 계속 로딩이 반복될 경우에는 화면의 “취소” 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취소된다.

**검색결과 상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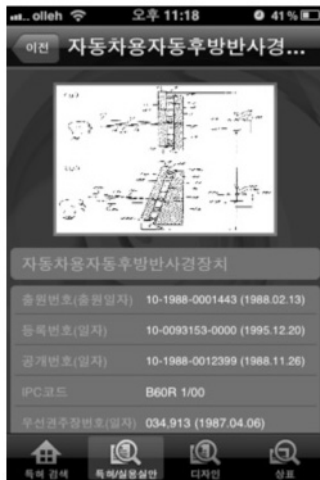
검색결과 리스트는 한페이지당 30개의 공보가 출력되고, 각 출력된 공보는 현재의 등록상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등록 공보의 경우 발명의 명칭이 오렌지 색이고, 거절/취하/소멸 공보의 경우 옅은 회색으로 출력되고 있다.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공보를 선택하면 자세한 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보의 경우 문서 내 항목에 대한 중요 서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공보전문에 대한 PDF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뷰어를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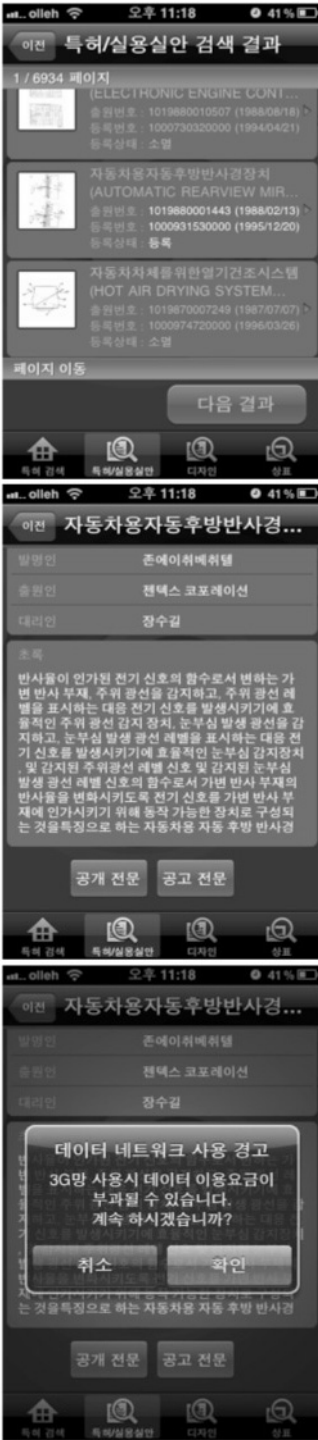
상단의 특허 설명 이미지를 자세하게 보고 싶을 경우 해당 이미지를 터치하면 대표도면 이미지가 상세하게 화면에 나타난다.(PDF 파일의 경우 용량이 크기 때문에 3G망에서는 과금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미지 보기 화면의 경우 멀티터치 기능을 이용한 자유로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다.



**디자인/상표 검색 기능**

디자인/상표 검색의 경우도 특허/실용신안 검색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본 검색항



화면에 출력된 PDF 공보전문

목에 다소 차이가 생기는데, 검색항목 중 “특실구분”이 없을 뿐 사용방법은 동일하다.

“검색항목 + 검색범위 + 검색키워드” 3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하는 형태 (단, 번호검색의 경우 전체 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디자인 검색결과 이미지 보기 인터페이스 화면

디자인검색의 경우 특허/실용신안, 상표 검색 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 UI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디자인 검색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다른 3가지 검색의 대표도면 보기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출력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하고 있다.

\* 특허청에서 제공 중인 “특허검색” 앱은 발명카페 내의 특허검색 기능만을 특화시킨 앱이다. 따라서 발명카페 내의 특허검색 기능은 “특허검색” 앱과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

## IPC 코드 검색

발명카페는 특허 출원을 하거나 관련 특허문서 검색시 해당 문서의 국제특허분류 체계에 따른 기술분야별 코드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IPC 코드 검색은 국/영문 키워드를 통한 검색과 사용자가 알고 있는 IPC 코드 5자리를 이용한 직접 검색 방법 두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된 IPC코드 목록을 보고 싶다면 간단히 “자동차”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결과를 출력해 준다.



## 지식재산용어

특허정보 열람 시 생소한 전문용어로 인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발명카페에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전문용어에 대한 검색 사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 검색만을 제공하는게 아닌,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식재산용어 검색은 사전과 같은 “초성” 인덱스 버튼과 “키워드” 입력을 통한 두 가지 형태의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검색 결과 내 검색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발명다이러리

발명카페는 발명가들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발명다이러리”라는 기능이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발명가 또는 연구원이 발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명다이러리’를 구동시켜 그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이미 출원된 특허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허검색’을 구동시켜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이 발명다이러리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 발명주제 등록

발명다이러리를 최초로 실행하면 사용자가 등록한 주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주제를 등록해야만 아이디어 등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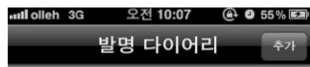
발명주제는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다.

발명 주제 추가 화면을 보면 발명일자/발명명칭/출원번호 입력란이 정보이다. 출원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번호는 사용자가 출원한 특허를 그룹으로 만들 경우 사용하기 위함이다.



### 발명주제에 새 아이디어 등록

발명주제를 등록하면 발명다이어리에 등록된 주제가 리스트로 나타나게 된다. 등록된 발명주제는 아이디어가 없는 그룹이므로 해당 그룹을 누르면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 버튼 메시지가 출력된다.



\*새로운 아이디어 추가 시 등록된 발명 주제의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새로운 아이디어 등록 화면은 상단에 발명 주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림”이라는 항목인데 앞서 얘기했던 “특별한 기능”이 이 부분이다. 발명다이어리에는 발명가가 아이디어를 좀더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메모 등록 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과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등록된 아이디어 보기

등록된 아이디어는 그룹별 관리가 가능하며, 해당 발명 주제를 클릭할 경우 아이디어 등록일을 기준으로 아이디어 리스트가 출력된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보기와 월(달력)보기 리스트 출력이 가능하다.

아이디어 목록보기 인터페이스 화면



### 수수료계산/특허기네스

특허청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발명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바로 수수료계산/특허기네스 서비스이다.



### 수수료계산

수수료계산 서비스는 현재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계산 기능의 주요 항목을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허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이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예상할 수 있다.

### 특허기네스

특허기네스 서비스는 대표적인 발명품과 역사를 예로 대중적인 특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

마지막으로 발명카페의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 기능 소개이다. 발명카페는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와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내장 웹브라우저 기능을 탑재하여 앱 상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특허청 모바일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특허청 뉴스, 통계연보, 심사지침서, 권리별정보, 지재권제도, 사이버공지 등의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플랫폼

특허청은 통합 특허정보 제공 통합 앱 “발명카페”와 별도로 특허정보 검색에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특허검색”이라는 검색용 앱(App.)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앱은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플랫폼의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보급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각 플랫폼 앱스토어에서 “특허”, “특허검색”, 또는 앱 명칭으로 검색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맺음말

최근 스마트폰이 일반 대중의 생활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보급된 특허청의 ‘발명카페’ 어플은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은 ‘발명카페’를 더욱 발전시켜 특허출원 이후 특허 심사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여 발명에서부터 출원 및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출원 관리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어쩌면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IT강국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지식기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발빠른 특허청의 노력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발명카페”와 “특허검색”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으로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특허청이 2011년에는 어떠한 서비스로 특허세상을 만들어갈지 기대해 본다. 2011. 3 |



제공 특허청

# 위기경제 시대의 미래경영

위기 경제 시대에 미래를 생각한다

이 태 원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



그림1. 영업정지로 인해 대량인출사태를 맞은 부산의 저축은행에 물린 가입자들 (헤럴드경제 2011. 2. 21)

##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위기'

‘경제’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던 시기를 지나(물론, 다시금 그런 의식이 되살아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폭탄테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기란 것이 폭탄테러와 너무 유사한 점은 그것을 당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괴력과 영향력이 단지 주변에 몇 명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연쇄적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국내에서 빚어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염려를 하게 된다. 막연히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며, “또 터졌네.” 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절부절못하게 되고 만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과연 믿어도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조금이나마 높은 이율을 보고 저금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과 예측은 사소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재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작은 금융사건 하나하나가 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소박한 계산마저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은행이나 거대 보험사가 무너지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막는다고는 해도, 연쇄적인 금융위기까지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는 사건에 대해서는 도리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난을 고민한다.

### 다변화와 다각화를 통한 경영의 건전성 확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상당히 다변화체제를 갖추고 있게 되었다. 아직도 상당히는 제조업이 차지 하는 규모가 가장 크지만, 생산제품의 범위도 광범위하고, 아직 영미일의 금융·보험사들을 공략할 만한 금융·투자 상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의 금융·보험사들과의 적절한 정도의 시장규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별 재구매율<sup>1)</sup>을 보면, 닛산과 렉서스에 이어 현대차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만 볼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자국 브랜드가 아닌 동양의 두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해마다 수입차 등록률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수시장은 자동차회사가 해외진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국산차를 선택해주고 있다.

경제구조의 다변화는 무엇보다 다양한 경제적인 위기를 상쇄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산

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것에만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란 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정부의 산업시책이지만,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특정 산업만을 키우고 그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식의 정책이 되기보다는,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산업의 성장의 여파가 나머지 부족한 부문을 동반성장시켜 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운다고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치는 것보다는 토양을 이롭게 하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딱따구리가 찾아와서 벌레를 잡아먹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비록 우리가 아직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경쟁국과의 다툼으로 핵심산업을 키워야 하는 경제·산업 환경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양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경제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우월해졌다. 한 때 철강과 조선 그리고 반도체 정도만으로 국부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보다는 다각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지하고 운영해 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산업은 과거의 산업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公器로서의 기업

그런 점에서 기업은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위기관리에 철저하고, 확보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과거와 같은 수요예측, 미래예측이 아니라, 미래 만들기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을 논할 것까지도 없고, 당장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IMF시절에 무너지는 기업들 속에 피해를 입은 것이 누구였는지는 굳이 곱씹어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림2. 1967년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협회'를 만들어 '미래학(future study)'이란 학문 분야를 개척한 짐 데이토 교수. (조선비즈 2010. 12. 8)

1)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한 제품군일수록, 현재의 시장점유율보다는 재구매율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위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앨빈 토플러를 들어보면, 그는 책을 쓰기 위해 참으로 다양한 작업을 한다. 혼자만의 도서와 연구만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초일류기업의 CEO를 만나고, 증권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주요 국가의 국가원수들과도 교류한다. 쉽게 말해서, 미래를 움직여가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의 책을 써 나가는 셈이다. 경제나 사회현상을 CEO, 경제전문가, 국가지도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써낸 책이기에, 자연스럽게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틀림없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왜 우리 기업들은 애플의 아이폰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아니, 예측은 했으며 그 영향력을 간파했는가? 관련 기업의 관계자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손사래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폰에 적용된 기술들에 대해 별 것 아니라고 큰 소리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뻔한 기술들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내지 못했는가를 묻게 된다.

혹자는 우리가 워낙 1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1등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우리는 결코 1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앞선 해외 기업들이 만들어 낸 기술을 즉각적으로 쫓아서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면서 1등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율이 높지 않아서 선불리 모험을 걸기 위한 사업이나 기술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처럼 뻔해있는 것만 같다. 그런 우리치고는 High Risk High Return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물론 선두에 선다는 것은 줄줄이 추적자를 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고집만 따르고, 과거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2류 기업으로 추락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스타택과 레이저만 믿고 과거를 답습하다가 1등 기업의 지위를 잃은 모토로라나 기술력으로 앞선 장점을 잇고 외국 기업의 CEO를 영입해서는 영화 산업에 투자하고 수많은 콘텐츠들을 사들인 소니도 어찌 보면 삼성이 짓히고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3강의 대립을 뛰어넘는 기업전략

삼국지의 촉나라는 제갈공명이 재상으로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위나라를 공략했다. 당시 위·촉·오 삼국 중 가장 세력이 약했던 나라였지만, 제갈공명은 국가의 총력을 모아 해마다 출사표를 올렸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신하된 지위로서 한나라의 황제를 참칭하여 정벌이라는 이름으로 주변국을 침략하고, 끝내는 불법적으로 한왕조를 무너뜨리고 천자를 사칭한다는 것이 출사표의 명분이다. 이러한 명분과 상관없이 제갈량은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모으고, 방대신 공략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위나라 조정이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국난의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과연 제갈량은 위나라의 규모와 힘을 모르고 지속적인 공략전을 전개했을까? 그렇기보다는 촉이라는 소규모의 힘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하는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도전을 핵심전략으로 취했고, 이로써 한왕조의 계승이라는 명분을 주창하는 것의 근거로 삼은 것이



그림3, 1998. 11. 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폴더형 스타택의 인기를 '뜨겁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에도 시장 2위, 3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타택을 견제하기 위한 합종연횡을 맺어 대응한 바 있다.

다. 비록 땅의 크기와 힘의 균형은 위나라에 미치지 못하지만, 축한은 정통성을 가진 왕조로서 그 신하국인 위를 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명분을 유지하였다.

역사를 뒤집어 해석하면서 아쉽다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나라의 손권이 급작스럽게 동맹관계를 깨고 촉을 침략하여 관우를 죽이기에 이르고, 이후 오와 촉의 동맹은 다시 형성이 되었지만, 금이 간 상태에서의 동맹을 기반으로 공고한 전략을 수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적인 북벌전략도 제갈량의 죽음 이후에는 약화가 되어, 마침내 제갈량의 후임 강유가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결국 오나라보다도 먼저 위나라에 의해 촉한 왕조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림 4. 제갈공명의 이름을 빌어 출간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서적들.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보이는 이와 같은 3강의 구도가 비단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별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정도가 3강 체제<sup>2)</sup>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휴대전

화 시장도 삼성, LG전자,摩托롤라의 3강 구도<sup>3)</sup>가 형성되고 있다. 1위와 2위만의 싸움과 1~3위가 경합하는 싸움은 각자가 취해야할 전략부터가 다르다. 1위와 2위 간에 벌어지는 경쟁에는 사실 별다른 것이 없다. 1위는 시장점유율을 고수하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2위는 시장점유율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위와 2위 사이에는 사실 상부상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누가 먼저 시장을 점유하느냐의 싸움이 된다. 하지만 3위가 있으면 양상은 조금 달라진다. 2위와 3위 기업이 협력하여 1위를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1위와 3위가 협력하여, 2위 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현재 LG텔레콤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에서 휴대전화시장은 KT와 SK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둘의 태도만 보더라도, KT가 애플과의 공급계약을 맺자 SK는 갤럭시를 선택하였다.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한창 각축전을 벌일 때의 양상과도 또 다른 모습이다. 저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계열사를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에 각각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로고를 새겨 납품을 하곤 했다. 물론,摩托롤라의 스타택이 출시되었을 때에는 마치 지금의 KT가 애플의 아이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SK가 스타택에 대한 전매권을 취득했었다. 이후 KT가 고주파수 단말기용의 스타택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스타택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대략적인 3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콜라시장과 같이 1위와 2위는 있으되, 3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비록 3위와의 경쟁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1, 2위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도 만년 2위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1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바로 이 콜라시장에서 웹시가 취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2) 2010년도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47.2% 기아차 32.5% 르노삼성 9.3% GM대우 8.7% 순이다. 쌍용차는 2.2% 수준이다. 다만, GM대우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큰 데 비해, 르노삼성은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3) 이는 '2010 모바일 조사보고서(2010 Mobile Year in Review)'의 결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된 미국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시장점유율이다. 삼성은 전년 보다 3.6%포인트 높아진 24.8%의 점유율로 1위를, LG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한 20.9%로 2위, 그리고 미국 기업인摩托롤라가 16.7%로 3위를 차지했다.摩托롤라는 작년 동기대비 6.7%나 점유율이 하락했다.



그림 5. 비가 등장하는 중국의 펩시콜라 광고. 배경에 진한 빨강의 펩시로고가 선명하다.



그림 6. 붉은 색을 강조한 로고를 사용하여 중국진출을 꾀하는 펩시콜라의 중국시장 광고.

펩시는 만년 2위가 아니라, 한 때는 코카콜라를 앞지르는 성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외식산업에 투신하자, 함께 뛰어들었지만, 외식산업 전투에서 열세를 보이자 이내 코카콜라에게 콜라시장 1위를 내주게 되었다. 20여년간 콜라시장을 공략하던 펩시는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피자헛과 KFC에서도 손을 떼었다. 한 때 마이클 잭슨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 시장을 선점했던 펩시가 아니었던가? 누구라도 펩시의 콜라 시장 점유율 1위에 대한 경쟁포기를 믿기 쉽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미래를 만드는 기업, 펩시

오히려 펩시는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트로피카나와 스포츠 음료의 대명사인 게토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커오즈를 인수하고 나섰다. 탄산



그림 7. 펩시콜라 CEO 인드라 누이. CEO로 취임한 2006년에도 이미 '세계 기업계 정상 여성 50명' 중 2위를 차지했으며, 2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음료는 전통의 음료가 아닌 과거의 음료라고 인식한 것이다.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한 것이다. 어쩌면 코카콜라의 승리는 콜라시장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후지필름이 여전히 인스턴트 카메라의 필름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누구도 인스턴트 카메라 필름 시장을 경쟁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펩시의 이와 같은 다각화와 다양화가 제품의 다양화로 드러나는 하지만, 과거의 펩시에서 이런 다양화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이 변화를 만들고, 사람이 조직을 이룬다는 사실은 펩시의 이러한 변화에서도 유효하다. 즉, 펩시는 다양한 문화를 기업 내에 뿌리내리도록 종업원 중 소수인종과 여성의 비율을 극대화시켰다. 이는 임원급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취임한 펩시의 CEO 인드라 누이<sup>4)</sup>는 인디언-어메리칸이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 내 인력변화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펩시는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전통의 파란색깔이 아니라, 소위 코카콜라의

색인 붉은 색을 강조한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펩시가 러시아 시장을 공략했을 무렵만 해도, 생존차원에서의 시장 확보를 위한 고진감내의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200년대 후반부터의 확실히 중국시장 공략은 웬지 다 문화적인 배경을 오랫동안 준비한 이후의 전략적 행보로 느껴진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만일 예측한 것이라면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비록 경쟁기업의 절대적인 성장으로 인해, 따라 잡기 버거울 정도의 차이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neck and neck 할 정도의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다. 펩시의 경우는 코카콜라와의 차이가 결코 절대적인 우위를 내어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펩시는 콜라 시장에 대한 공략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으면서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에 전력투구하였다.

결국 펩시가 만든 미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과거에는 콜라 시장에서의 패배가 곧 기업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생존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콜라보다 더 건강한 음료를 찾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대중화와 웰빙푸드의 인기로 인해 기능성 음료를 비롯해서 보다 다양한 맛의 음료를 시장이 원하고 있다. 물론, 코카콜라도 콜라만 만들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외식시장에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생수까지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렇기에 펩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더욱 눈에 띄고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닐까?

**결론 :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제품 만들기**

펩시콜라의 예에서처럼 미래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목표점이 있지 않다. 보다 의미 있는 목

표점은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문화의 뒷받침 없이는 제품의 가치를 잃을 위험이 크다.

모토롤라는 스타택을 처음 내놓았을 때, 가장 가볍고 얇은 휴대전화를 강조했다. 레이저를 만들었을 때도 역시 같은 컨셉을 유지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 처음에는 스타택이란 제품이 가진 파괴력으로 휴대전화의 형태가 스타택을 따라서 폴더형으로 만들어지는 문화형성력을 갖기도 했지만, 제품 자체의 힘에만 의지한 결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까지는 확장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2010년도의 시장점유율은 7% 가까이 하락했다. 북미시장 3위라는 시장점유율의 수성마저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보단말기 시장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때문 시장점유율이나 당기순이익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PC의 표준, 노트북의 표준, MP3플레이어의 표준에서 휴대전화의 표준, 심지어 타블렛 PC의 표준을 창조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스스로 창조한 단말기들 간의 특징들 속에서 상호 피드백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아이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패드로 확장하고, 이를 애플의 기존 노트북과 PC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8. 애플의 맥북에어의 대항마로 내놓은 삼성전자의 9시리즈노트북. 제품의 힘에서만 아니라, 문화형성력에서도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4) 미국 펩시코의 CEO 인드라 누이(Nooyi · 55 · 사진)가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세계 기업계 정상 여성 50명' 중 1위를 차지했다. FT는 인도 태생 미국인인 누이가 "1994년 펩시코에 입사해 2006년 CEO가 된 뒤 위기에 직면한 펩시코를 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조선일보 2010. 11. 18)



그림 9. 윤석철 교수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 기업의 성공이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 2011. 1. 23)<sup>5)</sup>

문화라는 미래적 가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이 된다. 기업의 문화가 바뀌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도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형성력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약간의 이익이다. 기업이 제품 개발을 위해 투여한 개발비용, 생산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그리고 이윤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라도 제품에 합당한 가격보다 제품의 가치를 더 크게 책정해야 한다.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이라면, 사는 사람은 상당한 고액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제품은 100만 원짜리’ 입니대를 강력하게 선전한다고 해서, 그 제품의 가치가 100만 원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12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100만 원의 가격에 맞춰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20만 원은 제품의 생산가격에서 깎아낸 금액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향유할 수 있는 유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그것을 구매후지원서비스(소위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함으로 얻을 수도 있고, 사용자를 위한 모임을 조성하는 등의 문화지원서비스를 통해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제품을 깨끗이 사용한 사람에겐 결국 서비스 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고, 문화지원서비스는 특정한 사용자 그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 얼마나 제품 안에 문화형성력을 쏟아 넣느냐에 따라 제품의 실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 시장에서 곧 도태되느냐 아니면 장수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5) “애플의 성공이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도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의 일류 기업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적인 인물은 없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영속성 면에서는 개인보다 시스템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더 낫죠.”(한국경제 2011. 1. 23일자 인터뷰 기사 중)

# 발명 365

## 지렛대

**막** 대를 어떤 점에서 받쳐서 그 받침점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이다. 대저울을 비롯해서 이 원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힘을 작용케 하는 기구는 많다. 도르래나 회전축 등도 그 특수한 응용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위, 집게, 플라이어, 펌프 핸들, 병따개, 호두까기 등의 많은 생활용품들이 모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렛대는 언제 발명되었을까?

바퀴와 같이 지렛대도 수많은 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의 하나이다. 지렛대의 원리는 선사 시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을 완벽하게 기술한 사람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이다. 지렛대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딱딱하고 긴 막대를 가리키며 이 막대를 한 받침점 위에 올려 작동한다.





## 하이브리드형 자석 및 이를 포함하는 스테핑 모터



(주)아진게네시스

(주) 아진게네시스는 국내외에서 친환경 바람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에너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전인 5년 전부터 전기 모터연구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관심조차 없었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는 질문과 함께 “왜 비싼 돈 들여서 모터의 특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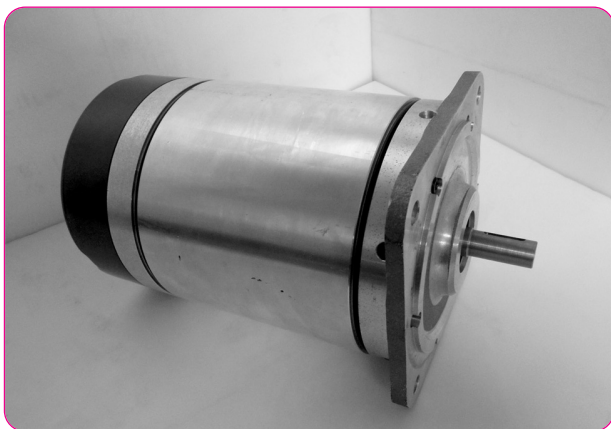
사서 고생한다”는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년 사이에 유가상승과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확연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터의 선진국인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연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지 4년이 경과된 지금은 하이브리드SR 모터의 특성과 적용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산악지형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도 기존 동급의 어떤 AC, DC, BLDC 모터보다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SR모터는 저속과 고속에서(15000RPM)도 높은 토크와 고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회전이 필요한 모든 기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넓은 구간의 저속과 고속 구간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에 적용하기 좋은 하이브리드 SR모터이다.

그러므로 힘이 많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 골프카, 전기 오토바이, 농업용 전기운반차, 농업용 관리기 등에 사용하면 그 차이와 힘을 느낄 수 있는 하이브리드SR 모터입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특허	3		3	5		5
실용신안						
디자인						
합계	3		3	5		5

### 사업화 성공기술 개요

권리명칭	하이브리드형 자석 및 이를 포함하는 스텝핑 모터					
출원번호	제 0549039 호					
제품적용 실적	적용 제품수	4품목	총 매출 실적	500백 만 원	국내매출	500백만 원
					해외매출	
기술의 내용	<p>하이브리드 SR 모터는 하이브리드 자석(영구자석+전자석)을 이용하여 개발된 신기술인 모터로 일반 AC, DC, BLDC 모터의 단점을 개선하여 저속과 고속에서(15,000RPM)고 효율과 고토크를 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SR 모터이다.</p> <p>이 원천 특허를 이용하여,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모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힘이 많이 필요한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과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기존 동급의 어떤 모터보다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Hybrid SR 모터이다.</p> <p>같은 용량의 모터라도 하이브리드 SR 모터는 저속구간과 고속구간에 서고 토크와 고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회전이 필요한 모든 기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넓은 구간의 저속과 고속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에 적용하기 좋은 모터이다.</p> <p>그러므로 많은 힘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 농업용 전기 운반차, 골프 카 전기 오토바이, 전기 ATV, 농업용 관리기에 사용하면 그 차이와 힘을 느낄 수 있는 Hybrid SR (HSR)모터이다.</p>					

### 기술이전 과정

일본에 반도체 장비 모터 구입 권으로 출장을 다니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일본 개인이 발명한 모터를 통상 실시 권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허의 권리도 5억 원을 투자하여 넘겨 받게 되었다.

이 원천특허는 우리나라에게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모터이기 때문에 모터 선진국으로 진입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게 취득하게 된 것이다. 미국 (US6369479 B1)과 대만(TW410354), 일본(제 334 9966호), 유럽(EPC)에서 취득한 권리도 함께 사용하게 된 것이다.

### 추가기술개발 과정

우리나라에서 설계도면으로만 새로운 모터를 개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었다. 수십 번의 금형제작과 수많은 시제품 생산으로 무수한 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제 성능이 나온 모터를 3년 만에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개발은 거의 3년 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로 장비 제작경험과 모터설계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권선과 기능적인 설계 변경 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금형비 제작비용 등, 또한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까지 같이 병행하여 개발하느냐 여기에 투자한 비용만 20억 원이 들어 서야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모터를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 모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기술까지, 같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골프카, 농업용 운반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ATV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된 것이다.

하나의 예로 골프카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에서 모터와 컨트롤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부분수리가 되지 않고 부품전체를 갈기 때문에 막대한 유지 비용과 외화 낭비가 심하다. 이러한 모터와 컨트롤러가 국내 개발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사가 방문 시 기술만 확실하다면 바꿀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골프장 업체의 말이다.

회사는 작지만 1인 5역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자들과 날밤도 세워가며 연구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모터산업에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또한 모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에 정말로 연구에 연구를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기술진과도 계속 협력하여 추가적인 모터연구도 계속할 예정이다.

**각 모터의 비교(동향) 자료**

모터에는 DC(HSR 모터도 DC계열임) 모터와 AC모터가 있는데 어떤 모터일지라도 구동 코일에는 단속적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DC 모터라고 해도 단속적인 전류가 흐르고 있게 된다. 이것은 어떤 모터라 할지라도 코일 전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DC모터와 AC모터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전원에 있으며 모터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후의 특성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면 AC 모

터는 수명이 긴데 DC 모터는 브러시나 정류자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때때로 보수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브러시나 정류자가 없는 BLDC & HSR 모터가 필요하게 된다. 아래 표는 두 모터의 차이를 비교한 것인데 어느 것이나 일장 일단이 있어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구 정밀도, 사용 목적에 따라 잘 분간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당사가 개발한 HSR 모터가 사용의 폭을 더욱 넓히게 된 것이다.

비교항목	AC모터	DC모터	BLDC모터	HSR모터
* 모터의구조	비교적 간단	복잡	복잡	간단
* 모터의크기	크다	작다	작다	작다
* 정류(전류)	무 점점식	브러쉬 정류자에 의한 유점점식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무 점점식	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무 점점식
* 큰 동력화	쉽다	일반적으로 어렵다	비교적 쉽다	비교적 쉽다
* 고 속 화	비교적 어렵다	어렵다	쉽다	쉽다(15,000RPM)
* 저 속 화	비교적 어렵다	일반적으로 쉽다	비교적 쉽다	비교적 쉽다
* 회전 변동	적다(인버터사용)	일반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적다
* 토크 변동	일반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많다	적다	적다
* 출력 효율	일반적 나쁘다	일반적으로 좋다	좋다	좋다
* 제어 회로	약간 어렵다	쉽다	비교적 쉽다	약간 어렵다
* 진동 소음	일반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많다	적다	일반적으로 적다
* 클 린 도	좋다	나쁘다	좋다	좋다
* 보 수 성	보수 불필요	브러쉬,정류자 보수	거의 불필요	보수 불필요
* 수 명	길다	짧다	비교적 길다	길다

**사업진행 현황**

현재 한국의 농업용 전기운반차와, 골프카, 전기 ATV는 전체를 수입하여 판매 하던지 부품인 모터와 컨트롤러도 전량 수입하여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농업용 전기 운반차와 ,전기 ATV는 전량 수입산과 모터들과 부품들을 수입을 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산악지형과 언덕이 많은 실정에 맞지 않아 잘 팔리지도 못하고, 고장이났을 때 부품들이 없어 A/S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운반차 시장의 반응이 좋으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잘 안 팔리고 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기존 경운기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운전이 편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고, 한 달 유지비가 1000KM을 주행 했을 때 월 5,000원 밖에 들지 않은 농업용 전기 운반차 시장은 그 수요가 날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령화로 비포장 길이 거의 없는 시골 길에서 노인들의 관절염으로(비포장 길은 걸을 때 완충작용으로 관절의 무리가 적음.) 많은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 운반차가 중요한 교통 수단 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주)아진계네시스의 하이브리드 SR모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

고 국내 제작되고 A/S도 가능하다는 점들을 부각시키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대리점들의 높은 반응을 얻어 판매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용 전기운반차 시장

	예상 시장 규모	판매가격	시장규모
농업용 전기운반차	10만 대	500만 원	5,000억 원
기타농기계(관리기 등)	20만 대	250만 원	5,000억 원

### 판매 및 유통과정

당사는 국내산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으로 내세워 대상 업종의 대리점 망을 구축하여 영업 종사자에게 영업권 부여와 간단한 A/S도 가능하도록 기술 지도 할 예정이다.

### 판매전략

- 기존의 농업용 전기운반차의 등판능력의 비교 시험을 할 수 있게, 체험장을 마련해 시승기회를 주어 직접 타 제품과의 비교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한다.
- 국내산 기술로 국내에서 제작된 모터와 컨트롤러의 우수성을 부각시킨다.
- 모터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30% 늘어난다는 점과, 배터리 유지비용의 절감 효과를 부각시킨다.
-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주문형 농업용 전기운반차, 전기 ATV가 생산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과, 부품별로도 A/S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

연도 별 판매 전략

계획년도	사업 종류
1차년도	농업용 전기운반차, 골프 카, 전기 ATV
2차년도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3차년도	전기자동차용 모터

당사는 최종적으로 모터와 컨트롤러의 판매 전문회사로 키우기 위해 상기 제품들의 기술개발을 연차적으로 완성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년도만 완성품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다.

### 당사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비법

농업용 운반차는 우리나라의 기존 경운기 시장을 대체하는 큰 시장으로 기존 농기계업체와 손잡고 개발을 완료시킨 상태로 내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되면 많은 모터와 컨트롤러가 판매되리라 예상된다.

ATV(산악용 사륜 오토바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르막이 많은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는 기존 전기 ATV는 경사도 15%~20%정도밖에 오르지 못해, 거의 팔리지 못했는데 HSR 모터를 사용한 자사의 ATV는 경사도35% 정도에서도 중간에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여도 아무런 문제없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동영상 자료들로 부각시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응이 오리라 기대된다.

### 향후 판매예상

2011년에는 농업용 전기 운반차의 모터공급과 골프카시장의 틈새(모터와 컨트롤러를 전량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체를 못했는데 HSR모터로 바꾸면 효율이 높아 배터리 수명과 라운딩 횟수를 30% 늘릴 수 있으며, 비싼 일본산 배터리를 국내산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를 공략하면 농기계운반차 500대@1백만 원 약 5억의 매출과, 골프카 교체비용 200대@3백만 원 약 6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며, 그 수효는 매년 50% 이상 증대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향후 골프카 업체에 납품과 전기자동차용 모터는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자본 축적이 되면 향후 진출 아이템이 될 것이다.

##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분석

시장규모 <sup>1)</sup>			
세계 10억\$ 미만 또는 국내 500억 미만	세계 10억\$ 이상 또는 국내 500억 이상	세계 50억\$ 이상 또는 국내 2,000억 이상	세계 100억\$ 이상 또는 국내 5,000억 이상
시장성장률(CAGR) <sup>2)</sup>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시장경쟁 <sup>3)</sup>			
경쟁미약	보통	치열	매우치열
시장 성숙 단계 <sup>4)</sup>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사업화 성공 요인

모터 설계기술은 우리나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분야로 이 분야 20년 이상의 기술자가 설계 가공 제작 시제품생산까지 1인 5역의 역할을 하면서 1인이 토탈 제작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이 분업하면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달성한 점과, 단순히 모터 제작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컨트롤로 제어 기술자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제어설계와 시제품 생산까지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사만의 독특한 모터개발 완료
-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모터로 고효율과 고 토크를 실현
- 산학 협력 및 정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비의 효율적인 운영성과
-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공동목표를 가지고 연구에 매달린 성과.

2011. 3 |

1) 제품관련 연간 예측 시장규모(매출발생 후 3년 평균, 현재시장이 없는 경우 잠재시장규모 추정)

2) 2010년→2014년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3) 향후 3년후 목표시장내 경쟁자수 및 시장진입의 용이성

4) 향후 3년후 목표시장의 시장 성숙단계

# Information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건강하게 삽시다
  - KIPO NEWS
  - KIPA NEWS
- 회원가임을 축하합니다
  - 문화산책
  - 재미있는 퍼즐



## 경상북도

### Andong



# 안동산약

안동산약(마)은 사포닌, 뮤신, 아르기닌, 콜린, 칼륨 등 약용성분이 높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생 산약과 분말,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01 • 유래

마는 중국 원산으로 약초로 재배하며 산지에서 자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산지 또는 농가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02 • 특성

흔히 산지에서 자생하는 것을 산약(병마)이라고 부르며, 산약은 장마보다 덜 연하고 수분 함유량이 장마에 비해 적으며 산약은 경북 안동에서 많이 생산되어 전국생산량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는 한방에서 산약이라고 하며, 덩이뿌리는 식용/약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상표명 | 안동산약

| 권리자 | 사단법인안동 산약(마)연합회

| 등록번호 | 제 27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식용산약(신선한 것)

연락처  
사단법인 안동산약(마)연합회  
054-855-7888



## 전라남도

Yeongam



# 영암무화과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의 카리카 지방이 원산지로 뽕나뭇과에 속하며 과육은 꽃받침과 씨방이 발달하여 된 것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영양 과일**입니다.



| 상표명 |  
영암무화과

| 권리자 |  
영암무화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23호

| 상품분류 |  
제 31류 신선한 무화과

**연락처**  
영암무화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061-462-6010

### 01 • 유래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 후반 개화기에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1900년대 초 브룬스워 계통의 품종이 목포를 비롯한 여수와 남도의 도서지방과 항구도시를 비롯한 지역에 울타리와 정원수로 심어졌었습니다. 무화과가 재배 과수로 자리 잡은 것은 1930년대 초 목포의 갯바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배된 무화과는 주로 목포와 도시에 바구니와 함지박에 담아 노점에서 판매되는 이색적인 과실로 알려졌었습니다.

### 02 • 특성

무화과는 과육이 무르고 껍질을 벗기면 흰색의 끈적끈적한 유액이 나오는데 이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있고 무화과의 칼슘함량은 우유보다 많으며 많이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1930년대 초 영암지역에 무화과 재배단지 조성하면서 무화과의 주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



## 건강퀴즈 (재미있는 건강상식 퀴즈)

Q. 비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겨울에는 살이 더 찐다.
- ② 몸외부에 있는 지방보다 내부에 있는 지방이 더 빠지기 쉽다.
- ③ 아이들 비만은 발견 즉시 철저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
- ④ 뱃살일수록 비만도 다른 부위의 살도 뺄 수 있다.

A. ③

소아청소년의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성인비만으로의 이행을 막아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나, 다이어트 보다는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Q. 다음중 BMI에서 비만으로 판정되는 범위는?

- ① 18이하
- ② 19~24
- ③ 25~30
- ④ 30이상

A. ④

19에서 24 사이라면 신장 대비 체중은 정상이다. 또한 25~30 사이라면 체중 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30 이상이라면 비만에 속한다.

Q. 성인 남자가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음주량은?

- ① 하루 소주 1잔 이내
- ② 하루 소주 2잔 이내
- ③ 하루 소주 3잔 이내
- ④ 하루 소주 4잔 이내

A. ④

건강하고 알코올 문제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몸에 해롭지 않은 주량은 성인 남자가 하루 소주 4잔 이내, 여자는 하루 소주 2잔 이내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Q.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강의 변화가 아닌 것은?

- ① 기상이변을 인한 전염병 발병
- ②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발병률 증가
- ③ 기온상승으로 인한 장염 발생률 감소

A. ③

기온이 올라가면 세균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 이를 섭취할 경우 세균성 장염이 발생하기 쉽다. 이 때문에 기온이 1℃ 높아지면 장염발생률은 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다음중 찻가무시 예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한다.
- ② 밤 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땀이 나지 않게 반판을 입는다.
- ③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 ④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

A. ②

**찻가무시 병의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②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③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④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⑤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할 것
- ⑥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⑦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 특허청 직원의 한마음을 담은 “교훈석” 제막 행사

특허청은 ‘지식재산강국의 주역!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교훈을 담은 교훈석을 제작하고, 지난 2월 1일 11시30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훈석 제막 행사를 가졌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신축·이전 20주년을 맞아 건립한 교훈석은 가로 3.4m 높이 2m 크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교훈은 특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결정했고, 특허청 직원 1,625명의 이름으로 건립했다.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신축·이전한지 20돌이 되는 날에 교훈석 제막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연수원이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자체에 대한 특허·브랜드 지원 대폭 확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지자체의 특허·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70여 개 지자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지원에 63억 원을 투입한다.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사업비(2010년 26.5억)는 138% 증가한 것이고, 참여 지자체 수는(2010년 52개) 31%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전통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국내 특허, 세계 최단기간에 100만호 등록 달성

국내 특허등록 누적건수가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62년만에 100만건을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1948년 우리나라에서 특허법 제정 이래 최초로 특허등록된 이래 62년 만에 거둔 것으로써, 특허등록 100만 건을 달성하기까지 75년이 소요된 미국이나 97년이 소요된 일본보다도 앞선 기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특허등록 100만호를 달성한 국가이자, 20세기 이후에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특허등록 100만 건을 경험한 국가가 되었다.

\* 우리나라보다 특허등록 100만 건을 먼저 달성한 국가는 미국·일본·캐나다 3개국이나 이들 국가는 19세기 이전부터 특허제도를 시행해 왔다.

## 600개 알짜배기 특허 사업화 지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휴면특허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중 우수 특허 600개를 선별하여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11년에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보유한 특허를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지원대상별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심사기간 1달로 단축

특허청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무심사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기간단축을 시킬 예정이다.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에는 출원 후 1.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약 9개월 빠른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식재산 교육 열기 확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에게 지식재산권을 교육하는 IP리더과정에 모집 정원의 2배 이상이 신청하면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IP리더'란 중소기업내 R&D 분야 연구원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으로, 특허청은 2015년까지 총 5,000명의 IP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각 기수별 120명씩 5기수 운영을 통해 총 600명을 양성 중에 있다.

## 제23회 정기이사회 및 제16회 회원총회

2010 사업실적 및 결산 · 2011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우리회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간부회의실에서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등 총1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허진규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의장인사, 감사보고, 201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안) 승인, 비상근감사 선임(안) 승인, 전복지부 설립(안) 승인, 보고서 상향, 기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3시에는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회원총회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의 개회 선언 후, 그동안 우리회 운영 및 발명진흥사업에 기여해 온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규 회원에게 회원증을 전달하였다.

이어, 2010년 사업실적 및 결산 ·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가 이루어졌다.



사진설명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이 창생사 변경삼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과 이주열 경영기획본부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1월 27일과 31일에 천사의 집(경기 양평)과 은빛공동체(경기 파주)를 방문, 후원금 및 물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는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결연아동 3명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2월

##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하은산업
- 대 표 자 : 이재준
- 업태/종목 : 제조업
- 주 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44
- 전화번호 : 041-942-8523
- 홈페이지주소 : www.juhaeun.co.kr



- 회 원 명 : (주)세미머티리얼즈
- 대 표 자 : 박 건
- 업태/종목 : 제조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3번지 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6층
- 전화번호 : 031-622-8700
- 홈페이지주소 : www.semimaterials.com



- 회 원 명 : (주)부원로드텍
- 대 표 자 : 이종문
- 업태/종목 : 제조업/건설기계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48-4
- 전화번호 : 031-762-9931
- 홈페이지주소 : www.buwonroadtec.com

Originally Produced by Stadttheater St. Gallen, Switzerland, Werner Signer Managing Director  
EMK Musical Company & Teatro Present

Musical  
**MONTE CRISTO**  
FRANK WILHORN & JACK MURPHY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정의는 갖는 자의 것...  
사랑은 주는 자의 것

2011.3.1 - 4.24 충무아트홀 대극장

**더욱 애절해진 사랑과 더욱 치밀해진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화려한 복수극!**

사랑, 야망, 배신, 성공, 복수, 용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한 작품 속에 풀어낸 탄탄하고 스펀지 같은 원작 명성을 뛰어넘는 대작 뮤지컬로 부활! 단 1분, 1초도 시선을 땔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 다시 돌아왔다.

〈너희에게 선사하는 지옥〉, 〈언제나 그대 곁에〉로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의 매력적인 음악으로 느끼는 짜릿한 감동!

2010년을 멋지게 장식했던 류정한, 엄기준, 신성록, 차지연, 최민철 등 초연배우들과 최현주, 강태을, 김성기, 김장섭, 김영주가 합류해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완벽한 캐스트의 완성!

**몬테크리스토의 신화는 다시 시작된다!**

###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기간 : 2011년 3월 1일 ~ 4월 24일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시간 : 월, 수, 목, 금 8시 / 토, 일, 공휴일 3시, 7시(화요일 공연 없음)

티켓가격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관람등급 : 8세 이상 관람 가능

주최 : 충무아트홀, SBS, (주)EMK뮤지컬컴퍼니

주관 : (주)떼아트프로

제작 : (주)EMK뮤지컬컴퍼니

투자 : 이수창업투자주식회사, (주)센브리지

협찬 : 내일여행, 지펜싱

# 재미있는 퍼즐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	군
영	소
가	군
영	소
가	군
영	소

1. 거느리고 함께 가거나 옴.
3.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4.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 청나라에서 군신(君臣) 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다.
6.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옴.
9. 입으로 불어서 관 안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
11. 입을 예쁘게 살짝 벌리고 자꾸 소리 없이 밝고 보드랍게 웃는 모양.
12.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을 비는 일.
14. 향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 부분.
15. 존경하는 웃어른에게 공경히 받들어 사례함.

세	군
영	소
세	군
영	소
세	군
영	소

2.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다랗게 돌출한 육지를 말한다.
4. 병이나 기형(畸形)의 형태나 기능을 조사하여 그 성립 원리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5. 차가운 유리나 운모 따위에 입김을 쉴 때 표면에 입김이 응결하면서 나타나는 형상.
7. 나라의 일을 맡아 다스릴 만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8.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10. 깜짝 놀라 얼굴빛이 달라짐.
12. 생각, 태도 따위가 건전하고 착실한 맛.
13. 같이 일하거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
15. '속미음(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실제의 마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5		
			12			
11					15	
			14			

2월호 정답

고	도		변	화	무	쌍
	하	적	호		체	
용			사		물	법
접	두	사		수		무
	음		이	공		아
조	법	처	분		미	문
	칙		법	정	형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 \* \* \* \* \* ◎ 제 2 회 ◎ \* \* \* \* \* ☀️

# 지식재산능력시험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지식재산시대 나의 경쟁력

## IPAT 실시요강

###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기본 지식과 실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제2회시험 2011년 5월 28일 (토)
- 접수기간 2011년 5월 1일 (일) ~ 5월 24일 (화)
- 대 상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대상
- 응 시 료 개인: 20,000원 / 단체: 18,000원 (시험본부에 등록된 단체)
- 접수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공식사이트 [www.ipat.or.kr](http://www.ipat.or.kr)
- 시험장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 문 의 02) 3459 - 2777, 2888





#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 잠깐만요!



변호사 김치중

신중하게야 합니다!

## 든든한 해결의 길이 ‘법무법인 바른’에 있습니다

바른 원칙, 바른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은  
파트너변호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법률서비스를 펼칩니다.

서비스정신과 열정으로 자연스럽게  
높은 승소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8년 3월 5명의 변호사로 출범, 이제 국내 변호사 114명,  
외국변호사 11명 규모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은 물론  
송무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w Leader

법무법인 바른

www.barunlaw.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3 메디슨빌딩 4~6층  
대표전화 : 3476-5599 대표팩스 : 3476-5995

### 특허 · 지적재산권 전담 변호사

- 변호사 김치중 : 특허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0기
- 변호사 김재협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5기
- 변호사 김한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5기
- 변호사 최영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16기
- 변호사 윤 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7기
- 변호사 송봉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5기
- 변호사 유영석 : 사법연수원 35기
- 변호사 김수교 : 사법연수원 36기
- 변호사 김명환 : 사법연수원 37기
- 변호사 윤철중 : 사법연수원 37기
- 변호사 최재용 : 사법연수원 38기
- 변호사 윤화영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